2026년 Non-GMO 콩나물콩[3,000톤] 구매입찰[4차] 특별유의서

구매입찰번호	AT3094-SBI-26(693)
	AT3095-SBI-26(694)
	AT3096-SBI-26(695)

2026.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식량관리처 두류부

2026년 WTO TRQ 국영무역 콩나물콩 구매입찰 주요사항

1. 전자입찰시스템 개편(`25.8.20.~)에 따른 변경내용 확인

○ **지문인식 폐지 및 전자 인증 기반 방식 도입**

- **(로그인 및 전자서명)** 방식 택 1 : ① 사업자용 범용인증서(기존/클라우드 저장 가능), ② 사업자용 금융인증서(신규/금융결제원 발급분만 가능)

* ①,② 외 로그인 방식 중 개인용 간편인증(신규), 아이디/비밀번호(기존)를 통한 로그인의 경우 응찰 불가(단순 정보조회만 가능)

** 개인용 간편인증 : 통신사 PASS, 네이버, 카카오톡, 드림인증 등 13개 민간인증서

○ **조달청 등록된 대표자, 대리인만 수입권공매 입찰 가능**

- 서류제출, 응찰 등 입찰 관련 버튼 클릭 시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필요, 등록된 정보와 다를 경우 응찰 불가 *** 입찰 시 필요절차 : 로그인 → 간편인증 → 전자서명 방식 선택(사업자용 범용 or 금융인증서)**

※ 전자입찰시스템(www.atbid.co.kr) "모의입찰"을 통해 사전 이상 유무 반드시 확인 바람

2. (국외기관 안전성검사) 안전성검사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료채취보고서 및 안전성결과확인서 제출 (별지서식 8, 11 참고)

○ 정선·포장일 이후 샘플을 채취하여야하고, 정선·포장되고 있는 작업현장 및 일정표 확인, 포장재 상 포장년월일 여부, 선적일정 등의 내용 및 사진이 채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 시료채취보고서 및 잔류농약증명서 상 **샘플 채취 및 검사일은 포장일 이후**여야함

○ 안전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공사 지정 수출국 현지 검정사**에서 시행해야 하고, **해당 기관이 발행한 시료채취보고서**를 공사 담당자 e-mail로 보내야 한다. 해당 기관의 시료 채취가 어려운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수출국 현지 검정사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공사 해외지사에서 여건에 따라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혹은 공사 지정 수출국 현지 검정사를 통한 보고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지사 현지 사정에 따라 채취가 불가능하여 선적지연 등 손해발생 시 업체 귀책

** 안전성검사기관 : 식약처 지정 국외검사기관 또는 국내검사기관

○ 안전성검사기관이 시료채취를 하지 않는 경우, **채취기관에서 시료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채취된 시료와 동일한 시료(2kg)를 채취기관에서 공사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로 송부하여야한다.**

*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4층 수급사업부 (13477)

○ 관련 제반비용(시료채취보고서 발행비, 시료발송비, 검사비용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3. (자체 안전성검사) 공사 안전성담당 부서의 사전 안전성검사 결과 검출 시 식약처 지정 국내검사기관에 재검사 의뢰 후 검출 시 반송 조치

○ 자체 검사용 시료 도착 또는 확인 지연으로 검사 결과 및 통관이 지연되어 발생 되는 추가 비용 부담은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며, 자체검사 합격 시까지 대금결제 유보

○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미검출 되더라도 식약처 합격 전 공사 안전성검사 결과(시료채취보고서에 의해 수급사업부로 송부된 시료검사)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초과 검출되는 경우, 국내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 안전성검사를 의뢰하고, 재검 결과에 따라 반송 등 조치

○ 자체검사 결과 검출 시, 초과 검출된 항목에 대해 국내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서 재검하고 재검 결과에 따라 반송 등 조치

*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4층 수급사업부 (13477)

4.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에 의거 안전성검사 증명서 514종 징구 (별표5 참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26.5.19.)에 따라 잔류농약 51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기준을 고시일 즉시 시행하고 선적일자 기준으로 적용함**

○ 농산물 품목별 허용기준 준수해야하며 별도 **기준 없는 경우 일률기준(0.01ppm) 적용**

* 그 외 잔류농약 :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이 분석한 결과에 한함

○ 잔류농약 검사증명서의 경우 **한국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대한민국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선적일 이전에 변경 고시분이 있을 경우 변경 고시분을 따름

- (식약처 고시 2026-40호, '26.5.1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다성분 농약검사 항목 개정

○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잔류농약검사증명서 원본을 통관지역본부로 1부 송부**

5. 선적전 물품확인 현지 검정업체 실시

○ 수입 콩나물콩 「선적지 품위확인 매뉴얼」에 준하여 보관창고에서 견본채취, 현지 검정업체 시험실에서 규격검사 후 합격품에 한해 발아율 검사 진행

○ 선적전 물품확인 결과에 대해 공사 동의 없이 공급업체와 검정업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 계약자 귀책사유로 선적전 물품확인 재시행시 계약자는 원할 경우 물품확인 불합격한 물량분 외 추가 물량 신청 가능(공급자 부담)

○ 선적전 물품확인 관련 불합격건에 대해 공급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 결과 통보 후 2일 이내 공사에 선적전 물품확인 결과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적합 결과에 한하여 해당 검정사로부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선적전 물품확인 불합격품이나 물품확인을 미실시한 물량을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 선적한 경우 국내 도착항에서 공사는 즉시 반송조치하며, 해당 계약보증금은 전액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6. 선적 전 물품확인 미실시 시, 국내 도착항 국정검사 대체 및 확약서(별지서식 7) 제출

○ “질병관리본부-국가별 질병정보”에 따라 감염병 오염지역이 있는 경우 등 **출장자의 신변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을 시***, 국내 도착항 국정검사 및 입고지 정밀검사로 대체하며, 국내대리인 및 해외공급자는 이에 대한 동의 확약서(별지서식 7)를 공사 두류부 담당자 e-mail로 제출

- 국내 도착지 정밀검정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공사는 해당 물품의 반송 등 조치가 가능하며 결과 합격 시까지 대금결제를 유보할 수 있음

7. 특별유의서 상 발아율 등 구매규격 위격 시 시장가치하락률 적용 산식에 따라 구상 청구(별표2, 7 참고)

○ **구매규격 : 대・중립종 87%, 소립종 90% / 인수규격 대・중립종 84%, 소립종 87%**

*** 발아율 품위규격 미달에 대한 구상은 공사 지정 검정회사의 재배시험 결과에 따르며 구곡 또는 신·구곡 혼입품 등으로 구매규격에 미달하거나 떡매짐 등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인수거부 할 수 있음**

8. 해외공급업체 해외제조업소(포장, 가공장소) 확정시 통보 요청(별지서식5 참고)

○ 해외공급업체 해외제조업소 확정 시, 계약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정보(업체명, 주소지, 대표자명)를 **물품 공급계획서[별지서식5]**에 작성하여 본사 담당자에게 제출

*** 필요서류 : 해외제조업소의 대외무역경영자표안 등록증, 없을 시 영업직조 번역공증**

** 계약자는 물품 입항 전,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 상에 해외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 필수, 미등록으로 인한 통관 지연 시 관련 추가 발생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 포장재 한글표시사항에 생산자(해외제조업소), 수출자(수출업소) 구분하여 인쇄(별표4 참고)

○ 국외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신청서 작성 시, Packing Place, Manufacture 등 기입란에 해외제조업소(포장장소) 주소 기입 요망

9. 낙찰자는 낙찰통보 30일 이내 공급 예정 물품의 수매지역 또는 농가(창고)의 시료(1kg)를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에 송부

○ 검사결과는 비축농산물 사전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사전모니터링 용도로만 사용됨

*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4층 수급사업부 (13477)

< 시료 채취 내역 >

구 분	채취 대상	채취 주체	송부처	시료중량	공사 송부기한
국외기관 검사	포장완료 물품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검사기관 기준	-
공사 자체검사	포장완료 물품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aT 서울경기 수급사업부	2kg	시료 채취 즉시 발송
사전 모니터링	포장완료 물품	-	aT 서울경기 수급사업부	1kg	**낙찰통보 30일 이내**

10. 계약 물량을 일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

○ 계약물량 대비 선적물량(B/L상의 Net weight기준)이 일부라도 부족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11. 원산지 제한없이 GMO 검사증명서 제출 필수

12. 국정검사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는 입항일 전일까지 도착 엄수 및 도착지 항만비용 및 검정료 정산기준 숙지

○ **(메일 송부)** 제출서류를 한 세트(B/L, Invoice, Packing List, 한글표시사항, 식물검역증, 잔류농약증명서, Non-GMO 증명서 및 구분유통증명서 등)로 본사 및 통관지역본부로 송부

* 메일제목은 '(콩나물콩 소립) 업체명 00톤 _ AT0000' 의 양식으로 통일하여 송부

○ **(원본 송부)** 식물검역증명서, 안전성검사증명서, Non-GMO증명서, IP구분유통증명서(중국 외 국가) 원본은 통관지역본부로 송부

13. 해외공급자확약서 e-mail 또는 국제 우편 송부

○ 입찰신청 마감 전까지 해외공급자가 공사에 e-mail, 국제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

* e-mail 제출 시 해외공급자확약서 상 기재된 e-mail 주소로 제출하되,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확약서 미기재 e-mail 주소로 제출 가능

14. 금융제재 국가 여부 확인

○ 금융제재 국가 해당 시 신용장 개설, 지급동의서 거래 거절 등 문제 발생 가능하므로 **금융제재 국가 여부 확인 필요**

15. 공사 비축기지 도착 후 포장재, 중량부족 등 정상적인 판매에 문제 발생 시 계약자의 책임으로 전량 재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불가 시 반송 등 공사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국내 입항 후 포장재 관련 문제 발생 시, 국내공인인증기관에 포장규격 및 포장단량(별표 3)에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규격미달로 판명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재포장 및 반송조치함

16.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 개정(2024.1.25.) 및 시행

○ 공사 국영무역 입찰 제반사항 관련 개정된 물품구매 일반입찰 유의서 적용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기준 숙지(물품구매 일반입찰입찰유의서 제27조)**

* 식물검역, 식품검사 또는 공사 제시 검역조건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 또는 반송되는 경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인수거부로 인해 반송되는 경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콩나물콩[4차] 물품구매 특별유의서

제1조(입찰에 부치는 사항)

품목(HS)	입종	입찰번호	물량(톤)	도착기한	원산지	생산연도	도착항	인도조건
Non-GMO 콩나물콩 (1201-90.3000)	소립	AT3094-SBI-26(693)	1,000	'26.12.3.	제한 없음	'26년 9월 이후	부산항(신항)	CFR
	중립	AT3095-SBI-26(694)	1,000	'26.11.24.			부산항	
	대립	AT3096-SBI-26(695)	1,000					
합 계			3,000					

※ 도착일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입항일 기준임
※ 도착기한 이후 도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자 부담
※ 일반컨테이너(Dry Container)

제2조(입찰참가신청 절차 및 입찰일정)

구 분	내 용
입찰참가 신청기한	2026.10.19.(월) 15:00시 까지
입찰등록 접수처	aTbid 서류접수(www.atbid.co.kr) * 입찰정보-입찰서류 제출
제출서류	(aTBid 입력)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정보 (aTBid 팝업등록) 국영무역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청렴이행각서, 노동착취 근절 확인서 (aTBid 업로드) 사업자등록증명원, 해외공급자의 공급자확약서(Supplier's Certificate), 입찰보증금 납부증명 또는 보증증서
입찰일시	2026.10.20.(화) 10:00~11:00 (전자입찰방식, www.atbid.co.kr)

○ 입찰서류 제출방법은 별표 1을 참고로 한다.

○ 입찰등록 마감 전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24.1.25.) 제7조(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 및 제8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등록 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 신청 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지정된 입찰참가신청기한 내 aTBid 전자입찰사이트(www.atbid.co.kr)를 통해 입찰참가 신청하여야 하며(입찰참가 신청내역 직접 입력 및 아래의 제출서류 업로드), **우편 및 직접 방문 신청 시 입찰 등록은 불가**하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미등록 업체인 경우 우리 공사 관할지역본부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입찰등록이 가능

○ **해외공급자의 공급자확약서** :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24.1.25.) 제10조(해외공급자 확약서, Supplier's Certificate)에 의거하여 제출(별지서식 1)

* 해외공급자 확약서는 입찰신청 마감전까지 **해외공급자가 공사에 e-mail, 국제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
* e-mail 제출시 해외공급자확약서 상 기재된 e-mail 주소로 제출하되, 소속 직원임을 증명 하는 서류 제출시 확약서 미기재 e-mail 주소로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시 폐업상태인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불허
* **입찰 공고일(10.12.) 이후 발급분 제출**(국세청 홈택스 상 인터넷 발급 또는 세무서 방문 발급)

○ 입찰등록 서류상의 내용 중 허위기재 및 오류로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에 귀속된다.

○ **동일 대표자(해외공급자, 국내 대행업체 및 입찰참가등록 대리인 포함)가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 제7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입찰보증금)

○ 물품구매일반입찰유의서 제8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금액의 5% 이상을 **해외공급자 또는 국내 대행업체(이하 "계약자"라 한다)**가 입찰보증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은 국내대리인 납부 시 **현금,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보험금지급특별약관이 있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해외공급자 납부 시 미합중국달러화 또는 유로화 또는 위안화로 표시된 **보증신용장(Stand-by L/C) 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보증신용장의 경우 물품구매일반입찰유의서의 별지서식 7 사용

 ** 은행지급보증서로 입찰보증금 제출 시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보증서 원본을 공사에 제출

2. 입찰보증금 보증서 유효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2026.11.19.) 이후

○ 낙찰자(낙찰예정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 중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국고에 귀속**한다.

1. 입찰시간 종료 후 응찰을 철회할 경우
2. 소정기한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4. 소정기한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으나 계약체결 통보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

제5조(응찰조건)

○ **응찰조건** : 원산지와 관계없이 CFR 부산 (CY TO CY조건) 기준

구 분	입찰번호	입찰물량	응찰 단위	응찰단가 (CFR)
소 립	AT3094-SBI-26(693)	1,000톤	500톤	Metric 톤당 US$
중 립	AT3095-SBI-26(694)	1,000톤		
대 립	AT3096-SBI-26(695)	1,000톤		

※ 환적 및 갑판적 불가(분할선적 사전 협의)

제6조(낙찰자 결정)

○ 상한가격 이내 유효한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 제시자 순으로 낙찰처리 한다.

○ 낙찰자 결정은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24.1.25.) 제14조(낙찰자 결정)에 따른다. 다만, 최종 낙찰량이 최저응찰한도물량 미만인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 귀속을 면제 받고 대상물량의 계약 체결을 포기할 수 있다.

○ 응찰은 지정된 입찰 시간 내 1업체당 1회만 가능하며, 일단 응찰한 후에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단, 입찰시간종료 전에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 시, **aTbid사이트(www.at.or.kr)의 '입찰정보' - '참여입찰관리' 메뉴에서 취소사유를 입력하고 응찰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취소사유를 입력한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해당 입찰 재응찰이 불가하다. 그러나,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찰 시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일한 IP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담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담합 등 부정입찰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함

** 전자입찰사이트 및 aT홈페이지 '국영무역공고'의 「전자입찰 자가 응찰 취소 실시 안내」 공고문 참조

제7조(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aTBid를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전자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aTBid에 등록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서명날인으로 본다.

제8조(계약보증금)

○ 낙찰업체는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 제15조(계약보증금)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소정기한 내에 아래 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비율에 따라 각각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다.

국내대행업체	해외공급자	합 계
5%	10%	15%

- 해외공급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낙찰금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 국내대행업체 납부 시 **현금,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보험금지급특별약관이 있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원본제출)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해외공급자 납부의 경우 미합중국 달러화, 유로화 또는 위안화, 소정 양식(별지서식 4)에 의거한 미합중국 달러화, 유로화 또는 위안화로 표시된 **보증신용장(Stand-by L/C)** 또는 **외국환은행 등의 지급보증**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도착기한으로부터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 **도착기한이 초과될 경우 초과한 기간만큼 계약보증금 보증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 시까지 대금결제가 유보될 수 있다.**

○ **계약자가 계약물량 중 일부라도 공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한다.**

- 계약물량 대비 선적물량(B/L상의 Net weight기준)이 일부라도 부족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낙찰취소 처분된다.

제9조(대금결제조건)

가. 결제 조건

물품대지급률	결제 조건
50%	○ 물품대금은 신용장 요구서류 개설은행 도착 후 국내 도착항(CY)에서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도착지 검사 결과 적합판정일 경우, 수입신고 수리 이후 수입신용장에 따라 상업송장금액의 50%를 지급한다.
5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 규격검사·재배시험 발아율 합치 및 공사 비축기지 입고 시 인수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입신용장에 따라 상업송장금액의 50%를 지급한다. - 공사 비축기지 입고완료 후 품위(재배시험 발아율 포함)·손상·중량에 관한 공사 지정 검정회사의 검정 결과 및 통관 지역본부가 대납한 항만비용 등에 따른 구상금 발생 시 물품대 잔액에서 구상금 공제 후 물품대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정 기일 내에 구상금을 납부한 경우는 상업송장금액의 해당 지급률 전부를 지급한다.

○ 대금결제는 물품도착 이후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신용장 및 물품대금 지급)에 따라 **취소불능화환신용장**으로 결제한다.

○ 대금결제는 상기 결제 조건의 물품대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단, 공사의 동의하에 선적전 물품확인 미시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검사 규격합치 및 공사 지정 검정사 정밀검사 적합 판정 후 100% 지불토록 한다.

○ **도착기한 초과 시 초과한 기간만큼 계약보증금의 보증기한을 연장하여야하며, 연장 시까지 대금결제는 유보될 수 있으며, 물품대에서 구상금을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나. 신용장 제출 서류

○ **신용장 요구서류 목록**

서류내역	발행기관	서류내역	발행기관
선하증권 (Bill of Lading)	선사	농약사용 신고서	해외공급자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해외공급자	**Non-GMO증명서 (모든 원산지)**	정부기관, 단 정부기관 미발행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공인검사기관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해외공급자	**IP구분유통증명서**	유통단계별 관리책임자 (중국 외 국가의 경우 제출)
식물검역 증명서 부본	중앙정부기관	방사선조사검사 증명서	정부기관, 단 정부기관 미발행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공인검사기관
원산지증명서	정부기관 또는 상공회의소	수확년도 증명서	정부기관, 단 정부기관 미발행 시 해외공급자
안전성 검사증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공인검사기관 (잔류농약, 중금속, 총아플라톡신 포함)	공사 지급동의서	필요시 공사

※ **식물검역증명서, 안전성검사증명서, Non-GMO증명서, IP구분유통증명서(중국 외 국가) 원본은 입항일 전일까지 통관지역본부로도 송부(원본서류 지연도착에 따른 비용발생 시 공급자 부담)**

○ 선하증권(Bill of Lading) 필수 기재사항 : Freight, THC(Terminal Handling Charge), CRC(Cost Recovery Charge)[CRS(Cost Recovery Surcharge)], CIC(Container Imbalance Charge)[CIS(Container Imbalance SurCharge],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LSS(Low Sulphur Fuel Surcharge),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prepaid 30 days of free demurrage (including CY Electric charge, CY Over Storage Charge) 등 공사부담 비용을 제외한 관련 비용 일체

* 공사부담 비용 : **DOC(Document(D/O) fee),** CCF(Container Cleaning Fee), PFS(Port Facility Security Fee), WFG(Wharfage), 항만안전관리비(Port Safety Management Fee)

* 동 사항이 B/L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대금결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 신용장 요구서류 발급과 관련한 제반비용은 공급업체 부담

○ **안전성검사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 잔류 허용기준(514종 / '26.5.19. 일부 개정),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15㎍/kg 이하, 아플라톡신 B_1 : 10㎍/kg 이하), 중금속(납 : 0.2mg/kg 이하, 카드뮴 : 0.2mg/kg 이하)에 대한 검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증명서상 샘플채취 및 검사일은 포장일 이후**여야 한다.
- 안전성검사결과 발행기관 : 식약처 지정 국외검사기관 또는 국내검사기관

*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샘플채취 후 소독 등을 위하여 약품처리하지 않아야 함**
* **국외 안전성검사 신청서 작성 시, Packing Place, Manufacture 등 기입란에 해외제조업소(포장장소) 주소 기입 요망**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내외검사기관 확인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

○ **안전성검사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료 채취 시 공사에 공급할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료채취보고서 및 안전성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별지서식 8, 11 참고)**

- **시료채취보고서 및 잔류농약증명서 상 샘플 채취 및 검사일은 포장일 이후여야 한다.**
- 안전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공사 지정 수출국 현지 검정사**에서 시행해야 하고, 해당 기관이 발행한 시료채취보고서 및 공급자가 발행한 안전성결과확인서를 **공사 담당자 e-mail**로 보내야 한다. 해당 검사기관의 시료 채취가 어려운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수출국 현지 검정사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공사 해외지사에서 여건에 따라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을 통한 보고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지사 현지 사정에 따라 채취가 불가능하여 선적지연 등 손해 발생 시 업체 귀책
* 안전성검사기관 : 식약처 지정 국외검사기관 또는 국내검사기관
* **공사 지정 수출국 현지 검정사 혹은 공사 해외지사에 시료 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서식 10의 요청서 제출**

- 안전성검사기관이 시료채취를 하지 않는 경우, **채취기관에서 시료를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채취된 시료와 동일한 시료 2kg를 채취기관에서 공사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로 송부하여야한다.**

*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4층 수급사업부 (13477)

- 관련 제반비용(시료채취보고서 발행비, 시료발송비, 검사비용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물품 국내 도착 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외제조업소등록을 필하기 위해 해외공급업체 해외제조업소 확정 시, 계약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정보(업체명, 주소지, 대표자명)를 **물품 공급계획서[별지서식 5]**에 작성하여 본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필요서류 : 해외제조업소의 대외무역경영자표안 등록증, 없을 시 영업직조 번역공증**

- 해외제조업소 등록 미비로 인한 제비용 및 식약처 식품검사 실적 부재로 인한 정밀검사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포장재 한글표시사항에 생산자(해외제조업소), 수출자(수출업소) 구분하여 인쇄

제10조(물품규격 및 포장)

구 분	내 용	기타 사항
○ 물품규격	별표 2, 3, 4	○ 식약처 "관능검사 판정기준" 에 적합 하여야 함
○ 포장규격 및 포장단량		○ 포장재질은 "포장재 규격" 과 동일 내지 그 이상의 우수한 포장효과나 성능이 있는 포장재여야 함
○ 포장표시사항		○ 상표(브랜드)가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국내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제11조(선적 및 운송조건)

○ **컨테이너선에 선적하여 해상 운송하여야 하며** 환적 및 갑판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 **분할선적 허용조건**

허용 횟수	주 요 사 항
-	- 분할선적 관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발생 시** 계약자는 공사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분할선적 허용 횟수 초과공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통관수수료, 검정료 등 제반 비용은 **해외공급자 부담(구상청구)** - **분할선적시 모선별(B/L별) 안전성검사결과 제출 필수**

○ 운송수단 : 40FT 일반컨테이너(Dry Container)

구 분	비 고
일반컨테이너 (Dry Container)	- 40FT 일반컨테이너를 사용해야 하고 적재한도는 20M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적재한도 초과로 인해 도착지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가 부담한다. - 드라이컨테이너의 경우 짙은 안개, 우천 시 적입을 금지한다. - 컨테이너 적입된 콩나물콩 상부에는 천정에서 떨어지는 결로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크라프트지 3장(더미사이 중간 1장 및 양쪽 더미 상단 각 1장)**으로 전체 면적을 덮어야 한다. - 계약자는 컨테이너 내부 결로 피해 방지를 위해 **실리카겔 8kg 이상**(1kg × 8개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제습제(공사 사전 협의)를 컨테이너 내 상부 고리에 매달아야 한다. ※ 실리카겔(Silica gel) : 함수율 2%이하로 흡수율이 높고 포장재가 견고하여 분출을 방지, 독성.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컨테이너 반납 조건	- 공사 경인지역 비축기지 하역작업 후 서울지역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부곡ICD)로 빈 컨테이너 반납이 불가능한 선박회사를 통한 선적은 금지하며, 서울지역 내륙컨테이너 기지로 반납이 안 되어 추가비용이 발생될 경우 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입항전 반드시 공컨테이너의 의왕ICD 반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공사(통관지역본부)에게 공유하여 운송 지연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경인ICD로 반납하더라도 선박회사에서 장비반환료(Drop Off Charge, DOC)를 부과하는 경우 해외공급자가 부담한다. ※ 장비반환료(DOC)는 선박회사에 따라 부과 여부 및 비용 상이)

○ 계약자는 계약번호, 선박명, 선적물량, 선적일정 및 도착예정 사항을 선적 후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해 통관 지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자는 선적서류(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한글표시사항)와 식물검역증 및 Non-GMO 증명서, 잔류농약증명서 등을 한세트로 하여 **물품의 국내항 입항일 전일까지 본사 및 통관 담당자의 메일로 전송하여야 한다.**

 * 메일제목 예시 : (콩나물콩 소립) 업체명 00톤 _ AT0000'

○ **대한민국항 Free Time은 3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대한민국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THC, Free Time 기간 동안의 컨테이너 사용료・ CY내 경과보관료・소독비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B/L상에 "Free Time 30일 이상 확보, THC・BAF・CAF 선지급(Prepaid) 하였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동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대금결제를 거절할 수 있다.

 * Free time 30일 확보는"prepaid 30 days of free demurrage"의미

- 공급자가 선사 선정시 선사와 계약된 CY내 원활한 국정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역블럭을 확보하여야 하며, CY 내 검역블럭 부족으로 인한 검사신청 지연시 관련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NON-GMO 증명서(또는 IP구분관리증명서) 미비에 따른 식품검사 지연 및 식품 정밀검사 비용 지불 지연 등으로 Free time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 비용부담으로 Free time을 연장조치하여야 한다.**

- **식물검역증 원본・NON-GMO 증명서 원본은 입항일 전일까지 통관지역본부에 도착하여야 하며**, 입항일 이후 통관지역본부에 도착하여 계약된 Free Time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 도착한 일수만큼 계약자가 Free Time 연장조치 및 발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상기 계약자 부담 비용 발생 시 업체는 즉시 해당 비용을 완납하여야 하며, 동 비용의 완납지연으로 Free time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발생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국내 도착 후 품위규격 부적합 등으로 반송될 경우 공사 비축기지에서 수출국으로 반송되는 모든 비용은 해외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적재한도(40FT 20톤) 초과시, 적재한도 초과로 절감되는 컨테이너 1대당 USD 2,000** 및 통관 후 내륙운송업체 할증료, 구분운송에 따른 추가비용,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공급업체에 구상 청구한다.

○ 검역기관의 훈증소독 명령으로 훈증소독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훈증소독 비용을 지출하고 훈증소독 소요기간만큼 Free Time을 연장조치 하여야 한다.

○ 상기 계약자 부담 비용의 완납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는 물품대금 전액 지급을 보류한다. 또한, 동 비용의 완납지연으로 Free Time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발생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노후컨테이너(구멍이 나거나 파손된 것) 이용 또는 기타 수침으로 판매가 곤란한 손상품이 발생하여 계약자 귀책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자 비용 부담으로 해당물량 전량을 즉시 국외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노후컨테이너 사용으로 인한 컨테이너 파손 및 해상 운송.하역 중 발생한 컨테이너 파손에 대해서는 해외공급업체 또는 국내대리인이 선사와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등 컨테이너 반납 시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통관 완료후 컨테이너 내륙운송은 선박회사와 계약된 운송회사(선사 라인운송사)의 운송은 금지하며, 해외공급자는 선박회사 선정시 공사가 입찰을 통하여 선정한 운송업체가 내륙운송을 하도록 계약하여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D/O발급 지연 등 운송지체는 해외공급업체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선적 전 물품확인)

구분	내 용	기타 사항
선적전 물품확인 신청	○ 계약물량 100% 구매규격에 맞는 상태로 선별·포장하여 원산지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부착상태에서 별지서식 5에 따라 작성한 「물품공급계획서」와 별지서식 6에 따라 작성한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를 두류부 및 보관관리부에 제출	○ 계약자는 검품 요청일로부터 최소 10일전에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 및 물품공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물품확인 요청 지연에 따른 일정 차질은 계약자 귀책사유며, 검품 일자 및 장소는 보관관리부와 협의하여 결정) ○ 계약자는 선적전 물품확인 요청시 Lot별 구분적재한 창고 적재평면도(별지서식 12)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선적전 물품확인 관련	○ **계약물량에 대한 선적 전 물품확인은 공사 지정 현지 검정사 검품**(선적 전 품위확인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진행**하며, 필요 시 공사 직원 또는 공사 지정 대리인의 출장(관리감독)은 탄력적으로 운용(출장비용은 공사 부담)	○ 계약자 귀책사유로 선적전 물품확인 재검 및 연장 시 출장비용은 공급자 부담 (출장 연장 또는 재시행 전까지 공사 계좌에 별도 입금하여야 하며, 사전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출장연장 또는 재시행 불가)
	○ 출장시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공급자는 선적지 물품확인을 위해 파견된 공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숙소에서 물품 적재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함 (단, 물품확인에 관련된 장소이동에 한함)	○ 차량 준비 미비에 따른 출장지연 등 발생비용은 공급자 부담
검품 장소	○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에 기재된 창고(검품창고는 컨테이너 적입 및 확인 등이 가능한 창고에 한함)에서 물품확인 실시함 ○ 정선·포장 완료된 콩나물콩 보관창고는 우천에 보호될 수 있는 견고한 건축물(지붕·벽채를 가진 창고) 내부에 보관되어야 하며, 노천 또는 야외에 적재된 물량은 선적전 물품확인을 하지 아니함 ※ 선적지 검품 규격합치 물량은 보관창고에서 검정사가 컨테이너 적입까지 확인	○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에 기재된 창고 이외에 보관된 물품은 계약물량 100% 선별·포장 미실시 등으로 물품확인이 불가할 경우와 동일하게 해당 검품을 무효로 하며 비용은 해외공급자가 부담한다. 물품확인 재요청(1회에 한함)이 필요할 경우 해당 최초 비용 납부(한화(KRW)) 후 재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은 검정용역계약서 및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다. ○ 물품 적재 바닥에 파레트 등(바닥으로부터 10cm 이상)을 이용하여 흡습피해 방지조치를 취해야 함 ○ 선적전 물품확인 검사자의 이동이 가능토록 사방에 1m 이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검품 방법	○ 정선 완료된 물품은 반드시 20톤 단위(Lot)로 구분적재하고, 선적전 물품확인 발아율 검사 또한 20톤 단위로 실시	○ 선적전 물품확인 시 해외공급자 또는 국내대리인(대표 또는 별지서식 2의 대리인 위임장에 의거한 대리인)이 현장에 입회하여,

	○ 컨테이너 적입은 공사 직원 또는 대리인이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적입완료 후 aT 자체제작 Seal 봉인까지 확인 ○ 채취한 샘플은 『수입 콩나물콩 선적지 품위확인 매뉴얼('22.4 개정)』에 준하여 검정업체 시험실에서 품위검사를 실시함	품위계측조사표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 단, 상기인이 모두 입회하지 못할 시에는 현장입회가 가능한 사람(현지 물품보관 창고 공장장 등)을 현장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별도의 대리인 위임장을 「물품공급계획서」 및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와 함께 보관관리부에 선적전 물품확인 출장 출발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급된 잔류농약검사증명서의 잔류농약이 허용치 초과 시 선적불가 ○ 잔류농약검사증명서 발급 전 선적확약서(별지서식 15) 제출에 한해 선적을 허용하나, 도착 후 잔류농약검사증명서의 잔류농약이 허용치 초과 시 반송 조치
선적전 물품확인 재검	○ 최초 물품확인시 규격미달 판정에 따른 재검은 1회에 한하여 실시 ○ 출장연장 또는 재시행에 대하여는 반드시 계약자가 문서로 공사(보관관리부)에 요청하여야 함	○ 해당 최초 비용(검정, 출장)납부(한화(KRW)) 후 물품확인 재검 요청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은 검정용역계약서 및 공사「여비규정」에 따른다 ○ 선적 전 물품확인 재요청 및 연장 시 비용은 해외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연장의 경우 물품확인 종료일(귀국일정 제외) 전일까지, 재요청의 경우 출장 출발 전일(공휴일인 경우, 출발 전 영업일) 까지 납부(한화(KRW)) 해야 한다. 납부기한 초과 시 출장은 취소되며, 해당 출장일정으로 발생된 취소수수료(출장자 항공권, 호텔 등)는 해외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출장비용의 산정은 검정용역계약서 및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다. ○ 물품 재검시 규격에 미달하거나 확인요청 물량 전량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하고 보증금 전액 귀속 ○ 계약자 귀책사유로 선적전 물품확인 재시행시, 계약자는 원할 경우 선적전 물품확인 불합격한 물량분 외 추가 물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단, 최종 적합 판정받은 물량의 선적은 결과가 제일 좋은 더미 순으로 적입
선적전 물품확인 미실시	○ 해당 국가의 질병 및 테러 발생, 여행제한구역 3~4 단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등에 해당될 경우 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국내 도착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질병관리본부-국가별 질병정보" 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있는 경우 등 출장자의 신변안전 확보가 되지 않을 시, 국내 도착항 국정검사 및 입고지 정밀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국내대리인 및 해외공급자는 이에 대한 **동의확약서(별지서식 7)**를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선적전 물품확인에 부적합 할 경우 해당업체는 공사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통보하고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선적전 물품확인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에 한해 선적 가능하며 공사 직원 또는 공사 지정 검정사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물품이나 선적전 물품확인을 미실시한 물품을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선적한 경우 물품의 국내 도착시 공사는 인수거부 함

※ 물품확인 관련 기타사항은 보관관리부 『수입 콩나물콩 선적지 품위확인 매뉴얼』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및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 참조

○ 선적전 물품확인 소요기간은 발아시험 등으로 견본채취일로부터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8~15일(재검기간 별도) 수준임을 감안하여 검품 요청을 하여야 한다.

○ 물품공급계획서<별지서식 5> 및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요청서<별지서식 6> 제출처와 선적전 물품확인 수행 부서는 다음과 같다.

- 선적전 물품확인 담당부서 : 보관관리부(전화 : 061-931-0957, 팩스 : 061-804-4535)

○ 공사는 직원 또는 공사지정 검정사를 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선적전 작업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 현지 GMO 구분관리 및 선적전 물품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검사 결과에 대해 공사의 동의 없이 공급업체와 검정업체간 직접적인 접촉을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선적전 물품확인 검사 결과 집계시 해외공급자(대리인)는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공급자 확인 서명을 받아 검정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 '규격미달' 의심물량이 발견될 경우에 lot(더미)해체, 해포 등 품질균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규격미달' 포장품이 혼입된 경우 '속박이' 로 판단하여 품위확인을 중단한다.**

- 선적전 물품확인 불합격건에 대해 공급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 후 2일 이내 공사에 선적전 물품확인 결과 입회 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해당 검정사로부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선적전 물품확인시 합격하였더라도 **국내 도착항 품위검사 결과 구매규격 부적합 시 반송 등의 공사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적재단위(Lot)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품위검사를 실시하고 규격 이하인 경우 선적 거부**한다.

제13조(GMO 및 방사선조사 검사방법 및 제출서류)

○ **검사방법**

- GMO 검사 : 선적지 정부 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공인 검사기관에서 컨테이너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축분한 후 모선별 대표샘플을 **PCR법으로 검사한 결과 GMO 콩나물콩 혼입률이 3%를 초과할 경우 선적을 불허**한다.
- 방사선조사 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공인 검사기관이 직접 채취하여 축분한 모선별 대표샘플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TL)에 의해 검사한 결과 방사선조사 미처리 콩나물콩으로 판명되어야 하며 방사선조사 콩나물콩일 경우 선적을 불허한다.**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3조(표시대상) ②항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비의도적 기준한도가 공사 규격보다 낮게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 **검사비용**

- 잔류농약검사(중금속, 총 아플라톡신 포함), GMO 콩나물콩 혼입률 및 방사선조사 등 검사관련(신용장상의 요구서류 일체) 제반비용(출장비, 체재비, 항공료, 검사비용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공인 검사기관을 이용할 경우 샘플채취는 국내 계약 검정업체가 현지에 출장하여 검사용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국 현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출장 관련 제반비용(출장비, 체재비, 항공료, 검사비용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GMO 및 방사선조사 관련 국내법규 개정(제정)시에는 국내법규를 따라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8호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별지 2』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 에 의거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표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 중임.

○ **제출서류**

- 원료종자 공급회사, 생산농가, 수집회사, 유통업체, 운송업체 등 각 유통단계별 관리자(책임자)의 **구분관리 증명서**

* 증명서에는 생산, 수확, 보관, 운송 등 본선선적까지 전 과정에서 유전자변형(GMO)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관리 하였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Non-GMO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상기 구분관리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선적지 정부검사기관 또는 공사지정 검정(검사)기관의 **Non-GMO 증명서 원본 3부**

· Non-GMO 증명서는 **모선별로** 발급돼야 하며, 원본은 **입항일 전날까지**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 **Non-GMO 증명서는 정부기관(중국 CIQ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정부기관에서 Non-GMO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Non-GMO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Non-GMO증명서상에 모선명 및 한글표시사항에 기재된 포장연월일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정(검사)기관의 **방사선조사 검사증명서 원본 3부**

【제출서류별 공사 제출기한】

구 분	제출기한	제출처	비 고
물품공급계획서	선적 전 물품확인 출장 출발 최소 10일 전	두류부 및 보관관리부	-
선적 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	선적 전 물품확인 출장 출발 최소 10일 전	보관관리부	·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 제출 후 출장 7일 전 1회에 한해 수정 가능 * 재요청 시, 최소 10일 전 제출
식물검역증 Non-GM증명서, IP서류 등 선적서류 일체	입항일 전날	두류부 및 통관지역본부	· 중국 : 도착기한 5일전 · 중국 외 아시아국가 : 도착기한 20일전 · 비아시아국가 : 도착기한 30일전
안전성검사 결과 확인서	발행 후 5일 이내	두류부 및 통관지역본부	· 국내 진행 시, 결과증명서 발급 즉시 · 두류부(사본), 통관지역본부(원본) 송부

* 선적 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 제출(수정) 지연 시 공사와 추후 업무 진행 방향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야 함

제14조(검역조건 및 품위검사 . 검정)

가.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조건

○ **도착지 정부검사기관 합격조건**이며 도착항에서 식물검역 기준, 식품검사 시 농약 및 중금속 잔류허용기준(별표 5)에 적합하여야 하며 Non-GM 및 방사선조사 미처리 콩나물콩 이어야 한다.

- 도착항에서의 식물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결과에 따르며, 식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결과에 따른다.

· 단,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미검출되더라도 식약처 합격 전 공사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의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 국내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할 수 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 결과 훈증소독 명령이 발하였을 경우 훈증소독 명령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훈증소독 하여야 한다.

○ **국정검사(식물검역, 식품검사) 부적합 판정시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선적량 전량을 대한민국 역외로 반출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공급불이행으로 간주하고 기 지출된 물품대(신용장개설수수료, 검정료 등 기타 제비용 포함)를 공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인수거부·반송시, 혹은 국정검사 폐기 처분 지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승인**을 받고,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 완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면제**한다. **단, 선적전 물품확인시 현지 불합격품이나 또는 선적전 물품확인을 미실시한 물품을 임의선적하여 도착항에서 반송되는 경우는 계약보증금을 전액 귀속한다.**

- 수입 콩나물콩 검사결과 검역대상 잡초가 발견된 경우 선적량 전량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폐기 또는 반송토록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도착항 GMO 검사결과 **GMO 성분이 비의도적 혼입 허용한도(3%)를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 및 방사선조사 검사결과 방사선조사 콩나물콩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전량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기지출된 물품대(신용장개설수수료, 검정료 등 기타 제비용 포함)를 공사에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나. 품위검사.검정

○ 도착지 정부 검사기관(또는 공사지정 검정기관)의 검사 합격조건(손상검정은 도착지 최종 공사지정 검정기관의 검정조건)으로 하며,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달될 경우 인수 거부**할 수 있다.

- 도착 이후의 품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위검사 합격 조건이며 손상, 중량검정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대상이 아닌 항목의 품위는 공사지정 검사기관의 검정결과에 따른다.

○ 공사 지정 검정사의 검정결과 **구곡 또는 신.구곡 혼입품으로 구매규격에 미달하거나 떡매짐 등으로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인수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도착지 항만비용 및 검정료 정산기준)

※ 항만비용 : 도착지 항만하역 관련 제비용(Demmurage, Detention, Over storage charge등)
※ 검정료 : 도착지 수입농산물 검정 관련 제비용(국정검사, 입고검정 등)
※ 계약자는 대한민국항 Free Time을 **30일 이상** 확보
※ **Original B/L을 포함한 신용장 제출서류는 Free Time 종료 10일 전까지 개설은행(aT 본사지점)에 도착해야 함(원본서류 지연 도착에 따른 비용 발생 시 공급자 부담)**

가. 선적 및 국정검사 신청서류 지연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 선적서류 지연도착(국정검사 신청 필수서류) * B/L, INVOICE, PACKING, 식검증사본, 한글표시사항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서류 도착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원본서류 지연도착(국정검사 신청 필수서류) * **NON-GMO증명서** * **IP구분관리증명서**(중국 이외 국가만 해당) * **식물검역증(원본)** * **잔류농약증명서**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서류 도착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식물검역증(원본) 오류 보완 등으로 인하여 계약 Free-time 초과 시 보완완료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잔류농약증명서(원본) 도착 지연으로 인한 도착지(최초)정밀검사 판정 시 해당 비용 계약자 부담
○ 입항후 CY 반입지연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CY 반입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상기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Free Time 연장기간이 긴 사유 하나만 적용

나. 국정검사 위반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 식물방역법에 의한 유해 병해충 검출 위반 및 검역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검역검사본부)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식물검역위반 통보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입항 후 선적서류 도착 지연으로 식물검역신청(입항 후 10일 이내) 지연 시 해당 과태료 계약자 부담
○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위반 및 선별조치 등(식약처)	○ 계약 Free-time 초과 시 한글표시사항위반 통보일로부터 보완완료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품목 선별 등으로 인한 계약 Free-time 초과 시 보완통보일로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품위 규격검사 위격에 따른 재검사 신청(농관원)	○ 계약 Free-time 초과 시 농관원 당초 결과 통보일로부터 농관원 재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다. 항반비용(DEM, DET, OSC) 관련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 계약 Free-time 미확보	○ **미확보 일수 Free-time 연장 조치**
○ DEM+DET 포함 Free-time 확보	○ DEM+DET포함 Free-time일 경우 DET는 Free-time에서 제외(예)
○ 계약 DEM 확보, CY경과보관료는 미확보	○ 경과보관료 계약 Free-time과 동일날짜 적용

(예) 입찰유의서상 Free-time 30일이나 해외공급자가 Free-time 30일(DEM+DET 통합) 적용하여 선적한 경우 DEM 30일만 적용(DET는 선박회사가 CY반출일로부터 5~7일 Free로 부여함)
- DEM 30일 : 입항일로부터 30일 되는 시점까지 CY에서 컨테이너 반출시 비용 면제
[단, 컨테이너 반출후 선박회사에서 부여하는 Free기간(5~7일)내 공컨테이너 반납시 DET 비용 면제]
- DEM+DET 30일 : 입항일로부터 30일 되는 시점까지 입고작업을 완료하고 공컨테이너 반납

라. 계약 선적횟수 및 도착기한 초과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계약 선적횟수 초과	○선적회수 초과 B/L건당 통관대행료, 국정검사비용, Document Fee, Handling Charge, 검정료 계약자 부담
○공사에서 정한 도착기한 10일 초과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본사 물품인수 승인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본사 승인 시까지 국정검사 중단

마. Original B/L 지연 도착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통관후 Original B/L 지연도착 * Original B/L을 선사에 제출해야 DO발급이 되며 운송을 위한 CY 반출가능	○ 계약 Free-time 초과 시 통관일부터 Original B/L 도착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Original B/L은 본사 거래은행 도착일 기준

바. 도착지 정밀검정비용 발생 시

위 반 사 항	조 치 사 항
○국내 도착 후 식약처가 공급물품에 대해 정밀검정을 진행시,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잔류농약검사증명서(원본)**가 입항일까지 통관지역본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최초 수입업체로 정밀검사 받은 경우 포함) *포장년월일 이후 샘플링한 검사성적서에 한함	○공급업체는 도착지 정밀검정으로 인한 제비용을 부담한다.

라. 경인지역 공컨테이너 미반납

위 반 사 항	적 용 기 준
○경인지역 비축기지 운송후 공 컨테이너(일반컨테이너) 의왕 ICD 반납불가	○인천 및 부산 등 의왕 ICD 이외 지역 공 컨테이너 반납시 반납 운송비 계약자 부담

제16조(구 상)

○ 구상금은 물품구매일반입찰유의서('24.1.25.)의 제20조(지체상금), 제21조(품위검사 및 검정) 제25조(구상)에 따른다.

○ **지정된 도착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연 물량에 대해 지연일수 1일당 상업송장 금액의 0.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또는 '조기도착수수료' 를 부과한다.(도착일은 수입신고필증상의 입항일 기준)**

○ 구상금 발생 시 해외공급자 계약보증금, 국내 대리업체 계약보증금 순으로 구상금을 징수하거나, 물품대에서 구상금을 사전 공제 또는 별도의 합의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품위규격 미달품 구상시 물품구매일반입찰유의서 제25조(구상) ①항에 따라 적용하되, B/L량보다 초과 공급된 경우에는 B/L량을 적용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농산물 품위검사 결과 합격 판정이라도 **컨테이너별로 발생된 위격사항(농관원 '행정사항비고' 기재)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별 구상 또는 반송 처리한다. 단, 발아율 품위규격 미달에 대한 구상은 공사 지정 검정회사의 재배시험 결과에 따른다.**

○ **공사 지정 검정회사의 컨테이너별 재배시험 발아율이 구매규격보다 낮은 경우, 컨테이너별로 다음과 같이 구상을 결정한다.**

① 계약자가 합동검정(재시험) 실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사 지정 검정회사가 기 실시한 재배시험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가치 하락률을 반영하여 구상을 결정한다.

② 계약자가 합동검정 실시에 동의하는 경우, 합동검정은 아래의 상호일치시험으로 진행한다.

③ 공사와 계약자는 서로 다른 공인검정회사에 의뢰하여 합동검정을 실시하며, 공사는 합동검정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가치 하락률을 반영하여 구상을 결정한다.

④ 합동검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공사가 비용 선납 후 구상 청구)

구 분	상호일치시험 진행과정
시험의뢰	공사와 계약자는 서로 다른 공인검정회사에 재배시험을 의뢰 (단, 선적지 물품확인 시 참여한 검정업체는 제외)
시료채취	두 검정회사의 대표(또는 대리인)이 동시입회하여 동일한 시료를 채취 후 축분 및 분배 실시
재배장소	두 검정회사는 각각 다른 재배장소 1곳에서 따로 재배시험을 진행 (공사 . 계약자 간 합의시, 두 검정회사는 동일 재배장소 2곳에서 함께 재배시험 진행 가능)
재배시험	두 검정회사간 발아율이 오차 범위(5% 포인트)를 벗어날 경우,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재배시험 실시
최종결정	두 검정회사간 발아율이 오차범위(5% 포인트) 내에 들어오는 경우, 각 발아율의 평균치를 최종 발아율로 결정

제17조(반 송)

○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공급자의 전적인 비용과 책임으로 조건 없이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국내 수입신고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국내 수입 불가)

1.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 불합격 판정으로 국내 수입 불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검사 불합격

*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품(흙, 볍씨, 왕겨, 볏짚 등),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병해충, 소독방법이 없는 관리병해충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 식약처 식품검사는 변경고시분이 있을 경우 변경고시분을 따른다.

2.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미검출되더라도 식약처 합격 전 공사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의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 국내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
3. 방사선조사 검사결과 방사선조사 된 물품으로 판명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공사 비축기지 입고검정결과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달해 반송 또는 폐기명령 조치
5. 잔류농약검사증명서 발급 전 선적확약서(별지서식 15) 제출로 선적하였으나, 도착 후 잔류농약검사증명서의 잔류농약이 허용치 초과 시 반송조치

6. GMO 혼입률 3% 초과 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아율 검사는 컨테이너별로 실시되기에 **검사결과 발아율이 미달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즉시 반송**할 수 있다.

※ 대립·중립 : 84% 미만 시 반송

※ 소립 : 87% 미만 시 반송

○ 계약자는 공사의 반송명령일 또는 국정검사 폐기 처분지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승인을 받고,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해당물량의 B/L 분리를 통한 국내 반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 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 물량에 대한 계약보증금 귀속은 면제한다.

- 다만, **선적 전 물품확인 시 불합격품 또는 물품확인을 미실시한 물품을 공사 동의 없이 임의 선적하여 도착항에서 반송되는 경우는 계약보증금을 전액 귀속**한다. 이미 **물품대금이 지급된 경우 물품대금을 공사에 즉시 반환**해야 하고, 공사가 기지출한 **신용장 개설비, 해상보험료, 도착지 검정료 등 발생비용을 공사에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이행시까지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한다.
- 업체는 공사의 반송 명령에 따라 반송동의서를 제출하고, **반송완료 후 반송(수출)신고 필증 및 선적일이 명기된 수출 B/L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콩나물콩 반송 시 원활한 반송 진행상황 파악 및 관련법령 위반 차단 등을 위하여 통관 지역본부 계약 관세사를 통하여 반송 추진하여야 한다.

* 반송 통관 대행비용은 지역본부 계약관세사와 약정된 B/L 건당 요율 적용

제18조(계약의 해지)

○ **지정된 도착기한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및 해상운송 일수 감안 시 10일 초과가 명백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할 수 있다.

○ 컨테이너 적입기간, 해상운송 소요일수 및 선적전 품위검사 기간을 감안한 기일까지 **품위점검 요청이 없거나 요청이 있더라도 품위 점검 시 물량확보 미비 및 공사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될 시 계약해지**할 수 있음.

- 중국의 경우(10일) : 컨테이너 적입, 내륙 및 해상운송, 품위점검 기한 포함
- 미국·캐나다의 경우(20일) : 컨테이너 적입, 내륙 및 해상운송, 품위점검 기한 포함

제19조(수입 또는 반송신고 지연에 따른 조치)

○ 해외공급자 및 국내대리인 귀책사항으로서 식품위생법상 한글표시사항 오류 및 상대국 식물검역증 원본 오류 또는 원본서류 지연도착 등의 사유로 CY반입일로부터 30일내 수입 및 반송신고 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입 또는 반송신고 지연 가산세와 Free Time 초과에 따른 발생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입찰참가자격 제한)

○ 물품구매일반입찰유의서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다.

제21조(기타)

① (유의서 효력) 본 특별유의서의 효력은 물품구매일반유의서에 우선하며 본 유의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물품구매일반입찰유의서('24.1.25.)에 따른다.

② (전자입찰)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실시되며,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범용인증서) 혹은 금융결제원을 통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고 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www.atbid.co.kr)에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③ (공사 명칭) 입찰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환율) 입찰보증금을 원화로 납부(현금, 보증보험 등)시 상한가격 산정을 위한 환율은 입찰등록 마감일 서울외국환중개(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⑥ (재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결과에 대해 공급자가 재검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재검할 수 있다.

⑦ OFAC(미국 재무부 외국 자산 통제국) 금융 제재 해당 국가에 속하는 원산지 물품은 관련 자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있어 신용장 개설이나 지급보증서 거래가 거절 될수 있음. 상기 원산지 물품을 공급 입찰코자 하는 자는 입찰 전 관련 사항(국가내 지역, 통지은행, 최종 수취은행, 수출입 거래 시 선박회사, 수출자 정보)을 입찰 담당자 문의 및 공사 지정 은행을 통해 입찰 참가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OFAC 제재 프로그램 해당 국가**

(미 재무부 제재 프로그램 참조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Pages/Programs.aspx)

* 수단 경제재제 일부해제('17.10.12), 미얀마 경제제재 완전 해제('16.10.7)
* 단 관련국가가 경제 제재 해제와 별개로, 미 재무부의 자산통제국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인물 및 기관을 제제한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에 등재된 기관 및 인물과 관련된 기업은 거래 거절 조치

< 참고사항 >

□ 송금 계좌번호

○ 원화 보증금(입찰, 계약) : 가상계좌 발급 후 입금
○ 외화 보증금(입찰, 계약, **달러)** : 001087-452-000602 (농협중앙회)
○ 외화 보증금(입찰, 계약, **위안화**) : 452-0009-034151 (농협중앙회)
○ 보증금 이외(구상금 등) : 가상계좌 발급 후 입금

□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참고사항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2-00944 (대표자 : 홍문표)

□ 업무담당

업 무	수 입	선적지 품위확인 및 검정
부서명	두류부	보관관리부
담당자	차장 황규리 대리 박소휘	과장 정하나 주임 박효경
전 화	061-931-0761 061-931-0765	061-931-0951 061-931-0957
메 일	gyuri2@at.or.kr hwi@at.or.kr	parkhk527@at.or.kr

* 해외공급자 확약서 제출처 : hwi@at.or.kr 또는 나주 aT 본사 9층 두류부

업 무	통 관	안전성 검사
부서명	부산울산지역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수급사업부)
담당자	과장 김시회 대리 이정용	과장 박진아 대리 원나영
전 화	051-947-1077 051-947-1073	031-8060-6086 031-8060-6084
팩 스	051-644-1440	061-8010-1095
메 일	atbusan@at.or.kr	-

* 원활한 물품 도입을 위해 해당 통관지역본부에 선적 스케줄, 선적서류 등 사전 통보요망

※ 통관업무(식물검역증 및 안전성검사결과 원본 송부 주소) / 안전성 검사(낙찰자 시료 송부)

부산울산지역본부 Busan-Ulsan Regional Headquarters, aT Corp.	서울경기지역본부(수급사업부) Seoul-Gyeonggi Regional Headquarters, aT Corp. Supply & Demand Management Department
aT Busan-ulsan Headquarters, aT Corp. HANIL O/T 20F, 152 JASEONG-RO, NAM-GU, BUSAN 48475, KOREA	aT Supply & Demand Management Department, 4th floor, 229, Unjung-ro, Bundang-gu,Seongnam-si, Gyeonggi-do, 13477, Korea

□ 공사 자체검사용 시료 발송 방식

구 분	발송 방식	유의사항
공사 자체검사용 시료 발송 방식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 DHL - 수급사업부	· DHL 국내 도착 전 공사 메일로 시료 관련 정보송부(DHL번호, 시료 정보, 계약번호, 해외공급업체 명)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 해외공급업체 - 국내대리인 - 수급사업부	· 운송 시 시료 파손 유의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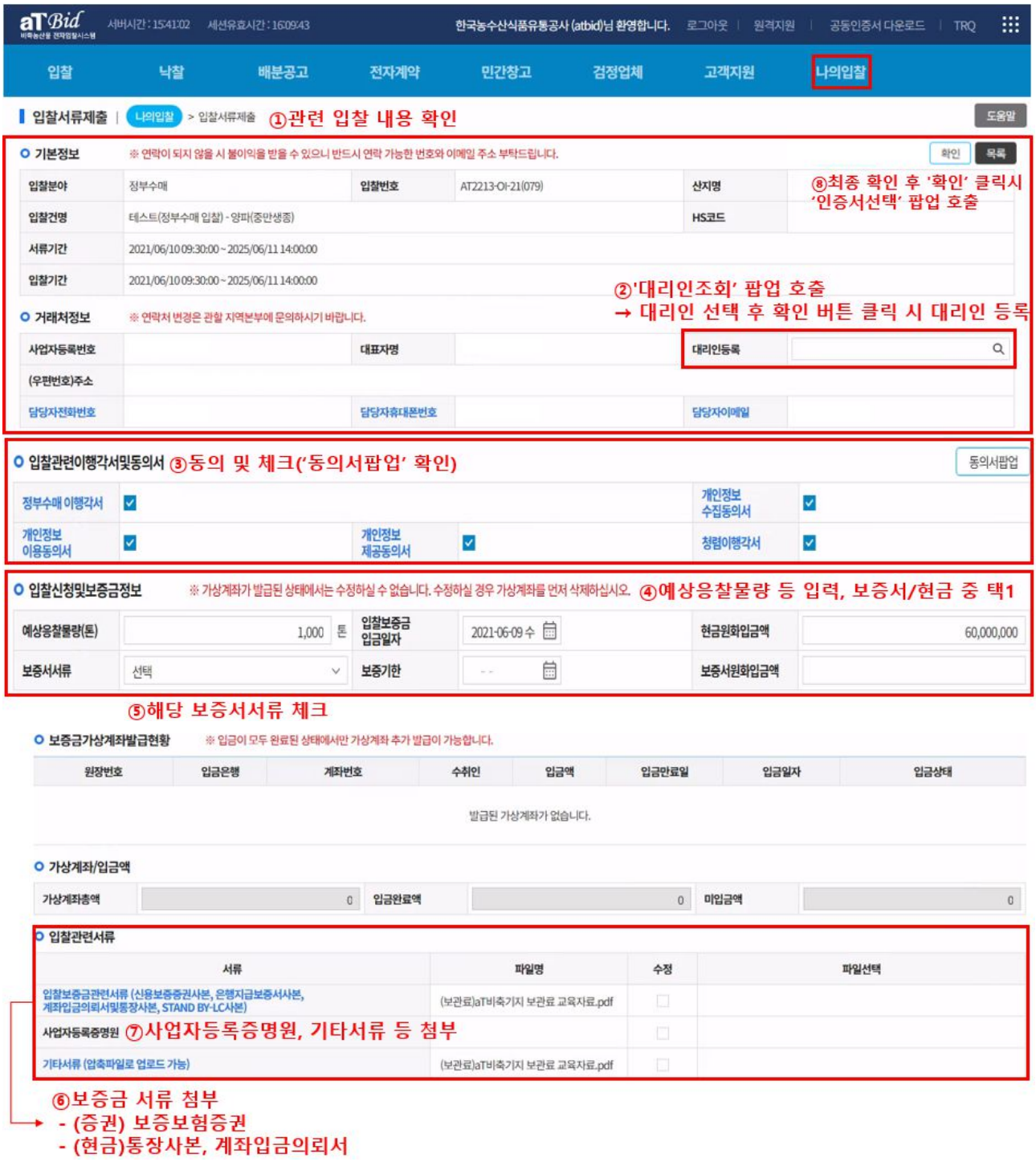
구 분	제 목
별표 1	입찰서류 제출방법
별표 2	콩나물콩 구매규격
별표 3	콩나물콩 포장조건, 포장규격, 파레트규격
별표 4	원산지표시 및 한글표시 사항
별표 5	국영무역 콩나물콩 안전성 기준
별표 6	검역대상 잡초
별표 7	콩나물콩 시장가치하락률 적용 산식

【별지 서식】

구 분	제 목
별지서식 1	Supplier's Certificate
별지서식 2	POWER OF ATTORNEY
별지서식 3	The form of B-bond
별지서식 4	The form of P-bond
별지서식 5	물품 공급 계획서
별지서식 6	선적 전 현지물품확인 요청서
별지서식 7	확약서
별지서식 8	안전성검사 결과 확인서
별지서식 9	품위계측조사표
별지서식 10	시료 채취 요청서
별지서식 11	시료 채취 보고서
별지서식 12	콩나물콩 창고 적재 평면도
별지서식 13	발아시험 검정방법
별지서식 14	계좌입금 의뢰서
별지서식 15	잔류농약검사증명서 발급 전 선적 확약서
별지서식 16	잔류농약검사증명서 발급 전 선적 확약서(영문)
별지서식 17	국영무역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별지서식 18	선적지 시료채취 절차

별표 1 입찰서류 제출 방법

□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www.atbid.co.kr) - 나의입찰 - 입찰서류제출



별표 2 콩나물콩 구매규격

1. 구매규격

구분	완전립	피해립 (변질·변색)	이 물	발아율	낱알의 고르기	물콩	수 분	색택
대립 중립	97.0% 이상	2.7% 이하 (1.0%이하)	0.3% 이하	**87.0% 이상**	90.0% 이상	6.0% 이하	14.0% 이하	황백색
소립	97.0% 이상	2.7% 이하 (1.0%이하)	0.3% 이하	**90.0% 이상**	90.0% 이상	6.0% 이하	14.0% 이하	황백색

※ ① 낟알의 고르기 조건
- 대립 : 체눈의 직경이 **7.3mm**인 체를 통과하고 **6.3mm**인 체에 남는 것
- 중립 : 체눈의 직경이 **6.5mm**인 체를 통과하고 **5.6mm**인 체에 남는 것
- 소립 : 체눈의 직경이 **5.8mm**인 체를 통과하고 **4.5mm**인 체에 남는 것

② 기타사항
- 식용콩나물 재배용으로 적합한 종자
- 비의도적 GMO 혼입율은 3.0% 이하
- 방사선조사 미처리 콩나물콩 종자
- 수확과정에 흙, 물, 풀 등의 접촉으로 인해 오염된 종자는 제외함

※ 발아율 인수규격 : 대·중립 84%, 소립종 87%

2. 구매규격에 대한 용어 정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함
- 완전립 : 피해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함
- 피해립 : 병해립, 충해립, 변질·변색립, 파쇄립 등 손상된 낟알, 미숙립(성숙되지 않은 것), 이종피색을 말함. 단, 변질변색립은 1% 이내
- 발아율 : 재배기에 의한 발아 후 5cm 이상 성장한 입수의 전량에 대한 비율 (정상 생육한 입수의 전량에 대한 비율임)
- 수 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
- 이 물 : 곡립(콩나물콩) 이외의 것을 말함
- 낟알의 고르기 : 시료 200g을 해당 둥근눈의 판체 2개로 동시에 쳤을 때 체눈의 직경이 큰 것을 통과하고 체눈의 직경이 작은 것에 남는 콩나물콩의 무게 비율
- 물 콩 : 대·중·소립 구분 없이 각 300립을 24 ±1℃ 수온의 깨끗한 물에 15분간 담근 후 미숙, 상처 등으로 물위에 뜬 것, 부풀어 물러지거나 터지는 것을 고른 개수 비율
- 색 택 : 황백색을 말함

※ 발아율 기준
- 콩나물 자엽 두 쪽 중 한쪽을 기준으로 검은색, 회색, 붉은색 등으로 변질 및 손상된 면적이 **10% 이하**는 정상으로 인정
- 뿌리부분의 갈색, 몸체 길이 방향으로 쪼개진 것이 10%이하는 정상으로 인정
- 비정상 발아 : 5㎝미만 성장, 배축길이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 줄기가 말린 것, 부패, 변질 등 발아가 전혀 안된 것

3. 수확년도 : 2026년 9월 이후산

4. 포장조건 : 25kg 지대 또는 25kg P.P 지대 혼합재

별표 3 콩나물콩 포장조건, 포장규격, 파레트 규격

콩나물콩 포장조건

1. 포장재 규격

□ 내용물 중량 : 정미중량 25kg(net)

※ 내용물은 표시 단량 이상이어야 하며 더미별 평균단량 부족할 경우 해당 더미 부적합 처리

□ 크 기 : 480㎜(W)×810㎜(L) **(±5% 이내로 규격 파레트에 적재가 용이할 것)**

□ 재 질 : 지대 또는 지대와 PP대를 혼합한 것(업체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 지대 : 크라프트지 4겹(지대 전체적으로 1.5～2cm 간격으로 천공할 것)

- **황색 또는 흰색 지대**로 KS M7501(크라프트지)규격 또는 동등 이상품 사용

❍ 지대와 PP대를 혼합한 것

- 외부(크라프트 지대) + 내부(PP(Poly Propylene))로 제작한 것
 (지대 전체적으로 1.5 ～ 2cm 간격으로 천공할 것)
- 색택 : 황색 또는 흰색

※ 포장재 규격은 파레트의 크기, 내용물의 용적, 수출국의 불가피한 확보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승인 후 변경가능

※※ 공사 구매규격 부적합 시 재선별, 재포장 작업을 할 경우 기 사용 포장재의 사용을 불허하며 반드시 신규 포장재로 재포장 작업을 하여야 한다.

포장재 규격	포장재 사진(예시)
□ 크라프트지 4겹 포장재 ○지대용적 : 25kg(콩나물콩) ○지대크기 : 480㎜(W)×810(L) ○지대재질 : 4겹지(외피 1겹, 내피 3겹 크라프트지) ○봉합 : 지대하단 보강지 대고 재봉 ○표시사항(외피) : 원산지 및 중량 ○지대무게 : 250±5g(4겹 크라프트지) ○지대의 전체 면적에 1.5~2㎝간격으로 천공	
□ 지대와 PP대를 혼합한 포장재 ○지대용적 : 25kg(콩나물콩) ○지대크기 : 480㎜(W)×810(L) ○지대재질 : 지대와 PP대 혼합 ○봉합 : 포장재 하단 보강지 대고 재봉 ○표시사항(외피) : 원산지 및 중량 ○지대무게 : 120±5g(지대와 PP대 혼합) ○지대의 전체 면적에 1.5~2㎝간격으로 천공	

※ 포장재 규격, 파레트 규격은 별표 3을 따른다

※ 포장재 사진은 재질 등 참고용이며, 인쇄사항은 별표 4를 따른다.

2. 포장방법

□ 물품의 운송, 조작, 보관에 적합한 **“크라프트지 지대 4겹”** 또는 **“크라프트 지대와 합성수지대를 혼합”** 한 형태의 포장으로 선적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탈루되지 않아야 함
- 지대일 경우 하단은 보강지를 첨부하여 재봉함

□ 공급자는 **B/L단위 전체물량에 대해 동일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상기 포장재질과 같이 천공하여 통풍이 원활하여야 함
- 미조치로 인해 국내에 도착한 물량에서 결로발생 등으로 내용물, 파레트, 포장재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수거부 할 수 있음

□ 포장재 하단은 10합사 이상의 면사로 봉합하여 3면 포장대(지대무게 : 250±5g/개 , 지대와 PP 혼합재 무게 : 120±5g/개)로 만든다.

□ 봉합실은 20S 10합사 이상의 면사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것으로 인장강도 41.1N 이상으로 하되 편연(片撚)한다.

※ 편연 : 단사(單絲)를 1본 또는 2본 이상 합하여 S 또는 Z 어느 한 방향으로만 꼬임을 주는 것.

□ 포장재 아래는 반드시 보강지로 너비 50㎜ 크라프트 주름지를 사용하여 재봉하고, 주름지 양쪽에 40㎜이상 여분을 주어야한다.

□ 지대 포장시 위·아래가 평행이 되도록 하여 **바늘땀은 7-10㎜간격으로 균일하게 받침종이 또는 받침실을 대고 재봉**하여야 하며, 바늘땀의 강도는 4겹 강도 2.16Kn 이상으로 한다.

□ 포장재 아래 부분을 봉합하고, **콩나물콩 25kg을 채운 후 상단으로부터 60mm 수준에서 재봉한다.**

3. 기타조건

□ 공사 구매 규격미달 시 재선별, 재포장 작업을 할 경우 기 사용 포장재의 사용을 불허하며 **반드시 신규 포장재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콩나물콩 포장작업시 포장재질은 상술한 규격에 맞추어야 하며, 컨테이너 적입·적출 작업 시 내용물이 탈루되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 컨테이너에 콩나물콩 적입시 파대용 예비 포장재를 **컨테이너별로 5매씩 추가 적입**하여야 한다.
- 컨테이너별 5매씩 추가 적입하는 포장재나 실리카겔 준비부족(일부소량) 등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적입은 진행하되, 공급자 귀책으로 구상처리 할 수 있도록 검정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검사 시 포장재 얼룩, 오염 등으로 인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제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한다.

포장재 규격

□ 지대 : KS M7501 세부규격 기준(1겹 기준)

항 목	평 량 (g/㎡)	인열강도 mN		인장강도 N/15		사이즈도 (초)	인장강도 x 신장률		비 고
		세 로	가 로	세 로	가 로		세 로	가 로	
기 준	90	950↑	1,090↑	78↑	39↑	20↑	160↑	200↑	지대용

※ 보관 및 취급 중 지대 강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천연 펄프로만 제조된 크라프트지를 사용**하며 재생용지는 사용불가

→ 국내 도착 시 무작위 검사를 통해 **항목별 수치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재생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공급업체에 구상처리 등 제재 조치예정**

□ 지대와 PP혼합 포장재(PP대 기준)

구 분		25KG
색 상		흰색 또는 황색
섬도(D)	경 사	1,000(±10%)
	위 사	1,000(±10%)
직조밀도 (올/5㎝)	위 사	24(±2)
	경 사	24(±2)
인장강도 (KG/올)	경사방향	3.0이상
	위사방향	3.0이상
치수(mm)	길 이	810(±5%)
	너 비	480(±5%)
매 당 중 량(g)		120(±5)
봉합실 인장강도(kg/올)		4.0이상
표 시 사 항		공사 제시사항

※ 포장재 색상은 흰색 또는 황색이며, 상기 포장조건 미준수에 따른 포장재 파손 등 손해 발생시 전액 공급업체 귀책사유로 구상예정임

파레트 규격

1. 규격

☐ 파렛트크기 : 1,100(L)×1,100(W)×140㎜(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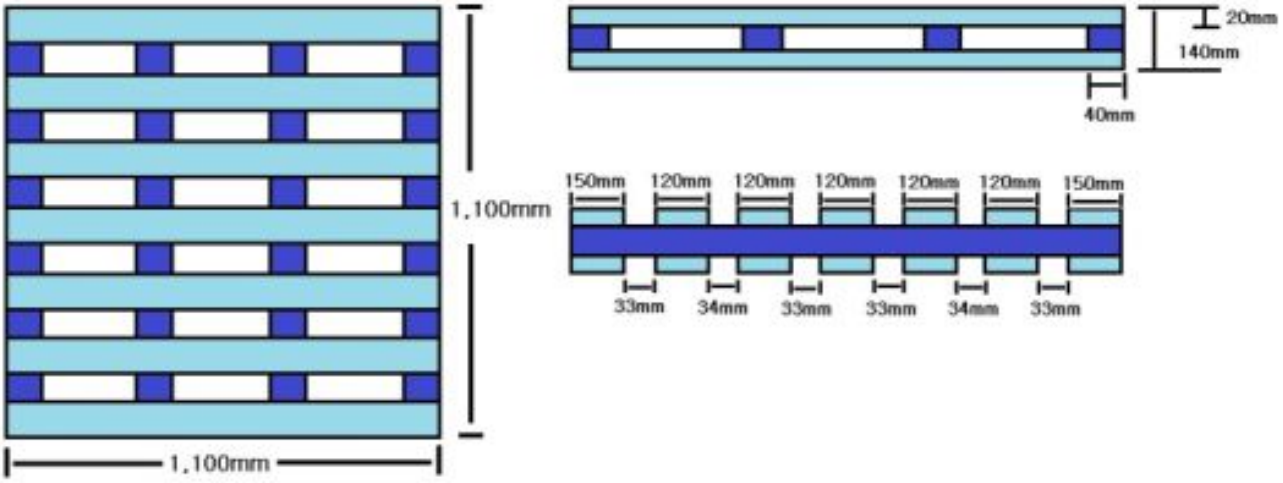
-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표준파렛트 규격임

☐ 적재수량 : 40ft 컨테이너에 파렛트 20개, 20톤 적입

☐ 하중강도 : 3.0톤 이상

○ 공급 첫 회는 하중강도 시험성적서(파렛트 제작소 또는 국가공인시험소) 제출

○ 단, 수출국 현지여건상 공사(aT) 승인 후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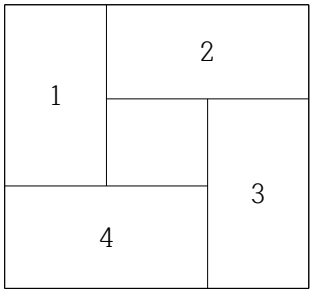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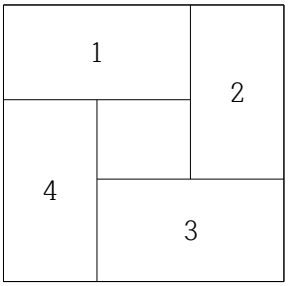
2. 사양

구 분	내 용
전체크기	**1,100㎜(L) × 1,100(W) × 140(H)**
각 목	4개 : 1,100㎜(L) × 40(W) × 100(H)
목판(내측)	10개 : 1,100㎜(L) × 120(W) × 20(H)
목판(외측)	4개 : 1,100㎜(L) × 150(W) × 20(H)
방습지 (보호판지)	1매 : 1,110㎜(L) × 1,110(W) × 1(H)
재 질	**원목** 또는 **3합판(免熏蒸)**
무게 및 하중	개당 25.0±5kg 수준 / 개당하중 **3.0톤 이상 강도유지**

※ 파레트 제작시 각목은 1개의 단일 형태로의 제작을 권고하며 합판처럼 붙여 제작시 튀어나옴이 없도록 고르게 제작하여야 함(컨테이너에 적.출입시 포장재 터짐 방지)

3. 파렛트 적재방법

☐ 포장물 적재 : 바닥 4포대 × 10단 = 40포대

<홀수단 : 1단~9단>	<짝수단 : 2단~10단>
	

☐ 포장물 바닥과 파렛트 사이 방습지(1,110㎜(L)×1,110㎜(W)×1㎜(H) 1매 삽입

☐ 포장물 벤딩 : (방법)자동기계 또는 수동 / (재질)그물망(FLEX-NET)

4. 기타 조건

☐ 컨테이너 적입작업

❍ 파렛트는 적입, 적출이 용이하도록 작업을 하여야 하며, 파렛트 적재시 파렛트 내부로 적재하여 컨테이너 적입시 Lot(더미)의 포대손상 및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한다.

❍ 통풍이 가능한 자재로 랩핑 작업을 하여야 함(그물망<FLEX-NET> 또는 동등 이상 효과를 가진 재질사용, 지대는 통풍을 위한 천공 필수)

❍ 결로에 의한 포장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 상부 및 내벽에 방습지 부착

☐ 파렛트 적재 및 랩핑작업

❍ 파렛트 당 1톤 적재 및 컨테이너 적입시 1단 적재하여야 함

❍ 밴딩작업은 자동랩핑기계 등을 사용하고, 그물망(FLEX-NET)은 하단부 파레트를 감싸면서 17회(75m) 이상 탄탄하게 감아 파레트 적재물이 흐트러짐이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적을 금지토록 함

❍ 목재파렛트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파렛트 재질은 식물방역법상 수입 제한되지 않은 것에 한함

❍ 수입화물에 목재파렛트 사용시 반드시 열처리 또는 MB(Methyl bromide)훈증으로 소독처리하고 목재 파렛트 자체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지해야 한다.

※ 수입제한사례 : 소나무속 식물과 잎갈나무 식물류의 목재류의 경우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캐나다산은 사용불가

별표 4 원산지표시 및 한글표시 사항

원산지표시 및 한글표시사항(콩나물콩)

1.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 품명 및 정미중량 표시(전면)

○ 인쇄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PP에 직접 인쇄)으로 영문 또는 한글로 표시

수입콩나물콩

(SOYBEAN FOR SPROUTING)

원산지(Country of Origin)	중량(Quantity)
한글 원산지(영문 원산지)	25KG NET

<부정유통 처벌규정>

원산지 표시 위반 (원산지표시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
용도외 사용(시중 유통 등) (양곡관리법 제32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부정유통 신고시 처분 확정 후 해당 법에 따라 **포상금(5~1,000만원)** 지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밀을 보장함)

※ 신고처 ☎1588-8112, 061-931-1114

용도
콩나물재배용

※ 견고딕, 돋움체 등 인쇄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한글 글꼴 사용 요망
※ 글자체, 글자크기, 간격 등은 참고하여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포장재 전면에 인쇄

2. 한글 표시사항(후면)

○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포장재 뒷면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탬프 작업(물에 씻기지 않아야 함)하고, 라벨 표시 한글표시사항의 포장재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라벨 부착 미허용**

○ 글자 크기는 20point 이상으로 표기해야 하며, 내용물이 위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표시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위반사항 발생 시, 공급자 비용으로 보수작업 등을 이행하여야 함)

1. 제 품 명 : 수입 콩나물콩 (Soybean For Sprouting)
2. 규 격 : (대립 · 중립 · 소립으로 표기)
3. 원 산 지 : 한글 원산지(영문 원산지)
4. 수 입 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TEL 061-931-1114)
5.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빛가람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수 출 자 : 영문으로 표기
7. 생 산 자 : 영문으로 표기
8. 포장년월일 : 20 년 월 일
9. 중량 및 포장재 : **25KG 지대 또는 P.P 지대 혼합재** *** 반드시 선택표기**
10. 원료명 및 함량 : 콩나물콩 100%
11. 반품 또는 교환장소 : 구입처
12. 교환 및 반품접수일 : 출고일로부터 20일 이내
13. 보관상 주의 :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보관
 (단, 보관 중 품질 변화 최소화를 위해 냉장 보관 권장)
14. 소비자불만신고센터 : 080-800-0277 또는 온라인 접수*
 * 온라인접수 경로 : atbid.co.kr 內 "입찰정보" > "나의 낙찰관리/직배관리"
15. 소비자상담 :

본 사	061-931-0765	서울경기	031-8060-6022
인 천	032-272-3013	강 원	033-920-1547
세종충북	043-902-9524	대전충남	042-389-5009
전 북	063-904-5924	광주전남	062-940-7020
대구경북	053-218-4896	부산울산	051-947-1073
경 남	055-608-5821	제 주	064-748-9478

※ 알레르기 유발 물질 : 대두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국번없이 1399

※ 재배기술 또는 환경에 따라 콩나물 생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소량을 시험재배하여 적합성 여부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콩나물콩을 보관할 경우, 냉장보관을 하시어 보관환경에 따른 품질편차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포장년월일은 일까지 반드시 입찰일자 이후여야 하며, '년 월 일' 한글표기 필수

별표 5 국영무역 콩나물콩 안전성 기준

국영무역 콩나물콩 안전성 기준('26.5.19. 고시 반영)

○ 해외공급자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명시된 안전성(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 기준에 합격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일 이전에 변경 고시분이 시행될 경우 변경 고시분으로 식품검사를 합격해야 하며, 불합격 시 해외공급자의 비용과 책임 부담 하에 조건 없이 반송 또는 폐기해야한다.

* 식품검사 불합격 시, 국내 수입신고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국내 수입은 불가

①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농약에 대해 농산물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농약은 식품검사 결과에 따른다.

* '19.1.1부터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은 일률기준 0.01 mg/kg 이하를 적용한다.

* 검사결과에 대한 적부판정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의약품 잔류물질정보』 홈페이지(residue.foodsafetykorea.go.kr)를 참조하여 현행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② 중금속 : 납 0.2 ㎎/㎏(ppm) 이하, 카드뮴 0.2 ㎎/㎏(ppm) 이하

③ 곰팡이독소[총 아플라톡신(B_1, B_2, G_1, G_2의 합)] : 15.0 ㎍/㎏(ppb) 이하

* 다만, 아플라톡신 B_1 은 10.0 ㎍/㎏(ppb) 이하이어야 함

《농약 잔류허용기준 : 공사 징구 대상 514종》

[단위 : mg/kg(ppm)]

No.	농약성분명	허용기준	No.	농약성분명	허용기준
1	이육-디아이피엔 (2,6-DIPN, 2,6-Diisopropylnaphthalene)	0.01	20	비펜트린(Bifenthrin)	0.5
2	아세토클로르(Acetochlor)	1.0†	21	보스칼리드(Boscalid)	0.05
3	아크리나트린(Acrinathrin)	0.01	22	브로모뷰타이드(Bromobutide)	0.01
4	알라클로르(Alachlor)	0.05	23	브로모포스-메틸(Bromophos-methyl)	0.01
5	알드린 및 디엘드린(Aldrin & Dieldrin)	0.01	24	브로모포스-에틸(Bromophos-ethyl)	0.01
6	알리도클로르(Allidochlor)	0.01	25	브로모프로필레이트(Bromopropylate)	0.01
7	아메트린(Ametryn)	0.01	26	부피리메이트(Bupirimate)	0.01
8	아닐로포스(Anilofos)	0.01	27	뷰프로페진(Buprofezin)	0.05
9	아라마이트(Aramite)	0.01	28	뷰타클로르(Butachlor)	0.01
10	아스폰(Aspon)	0.01	29	뷰타페나실(Butafenacil)	0.01
11	아트라진(Atrazine)	0.01	30	뷰트랄린(Butralin)	0.01
12	아자코나졸(Azaconazole)	0.01	31	뷰틸레이트(Butylate)	0.01
13	벤플루라린(Benfluralin)	0.01	32	카두사포스(Cadusafos)	0.05
14	벤퓨러세이트(Benfuresate)	0.01	33	카보페노티온(Carbophenothion)	0.01
15	베노다닐(Benodanil)	0.01	34	카복신(Carboxin)	0.01
16	벤조일프로프-에틸(Benzoylprop-ethyl)	0.01	35	카펜트라존에틸(Carfentrazone-ethyl)	0.01
17	비에이치시(BHC)	0.01(E)	36	키노메티오네이트(Chinomethionat)	0.01
18	린단(Lindane, γ-BHC)	0.01	37	클로르벤시드(Chlorbenside)	0.01
19	비페녹스(Bifenox)	0.05T	38	클로르부팜(Chlorbufam)	0.01

No.	농약성분명	허용기준	No.	농약성분명	허용기준
39	클로르단(Chlordane)	0.01	80	디클로란(Dicloran)	0.01
40	클로르에톡시포스(Chlorethoxyfos)	0.01	81	디코폴(Dicofol)	0.01
41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0.07	82	디크로토포스(Dicrotophos)	0.01
42	클로르펜손(Chlorfenson)	0.01	83	디에타틸-에틸(Diethatyl-ethyl)	0.01
43	클로르플루레놀-메틸(Chlorflurenol-methyl)	0.01	84	디에토펜카브(Diethofencarb)	0.01
44	클로르니트로펜(Chlornitrofen)	0.01	85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0.15†
45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0.01	86	디플루페니칸(Diflufenican)	0.01
46	클로로프로필레이트(Chloropropylate)	0.01	87	디메피퍼레이트(Dimepiperate)	0.01
47	클로로넵(Chloroneb)	0.01	88	디메타클로르(Dimethachlor)	0.01
48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0.07	89	디메타메트린(Dimethametryn)	0.01
49	클로르프로팜(Chlorpropham)	0.01	90	디메테나미드(Dimethenamid)	0.01
50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0.01	91	디메티핀(Dimethipin)	0.01
51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0.01	92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0.07
52	클로르탈-디메틸(Chlorthal-dimethyl)	0.01	93	디메틸빈포스(Dimethylvinphos)	0.01
53	클로르티온(Chlorthion)	0.01	94	디니코나졸(Diniconazole)	0.01
54	클로르티오포스(Chlorthiophos)	0.01	95	디니트라민(Dinitramine)	0.01
55	클로졸리네이트(Chlozolinate)	0.01	96	디옥사티온(Dioxathion)	0.01
56	신메틸린(Cinmethylin)	0.01	97	디펜아미드(Diphenamid)	0.01
57	클로마존(Clomazone)	0.05	98	디페닐아민(Diphenylamine)	0.01
58	코마포스(Coumaphos)	0.01	99	디티오피르(Dithiopyr)	0.01
59	시아노포스(Cyanophos)	0.01	100	에디펜포스(Edifenphos)	0.01
60	사이플루페나미드(Cyflufenamid)	0.01	101	엔도설판(Endosulfan)	0.01(E)
61	사이플루트린(Cyfluthrin)	0.05	102	엔드린(Endrin)	0.01
62	사이할로포프뷰틸(Cyhalofop-butyl)	0.01	103	이피엔(EPN)	0.01
63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0.05	104	에폭시코나졸(Epoxiconazole)	0.01
64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0.05	105	이피티씨(EPTC)	0.01
65	사이프라진(Cyprazine)	0.01	106	에타코나졸(Etaconazole)	0.01
66	사이프로디닐(Cyprodinil)	0.01	107	에탈플루랄린(Ethalfluralin)	0.05
67	디디티(DDT)	0.01	108	에티온(Ethion)	0.01
68	델타메트린(Deltamethrin)	0.1	109	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	0.01
69	트랄로메트린(Tralomethrin)	0.1	110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Ethoprop))	0.05
70	데스메트린(Desmetryn)	0.01	111	에티클로제이트(Ethychlozate)	0.01
71	다이알리포르(Dialifor)	0.01	112	에톡사졸(Etoxazole)	0.01
72	다이알레이트(Diallate)	0.01	113	에트리디아졸(Etridiazole)	0.01
73	다이아지논(Diazinon)	0.01	114	페나미돈(Fenamidone)	0.01
74	디클로베닐(Dichlobenil)	0.01	115	페나리몰(Fenarimol)	0.01
75	디클로펜티온(Dichlofenthion)	0.01	116	펜뷰코나졸(Fenbuconazole)	0.01
76	디클로플루아니드(Dichlofluanid)	0.01	117	펜클로르포스(Fenchlorphos)	0.01
77	디클로르미드(Dichlormid)	0.01	118	펜클로림(Fenclorim)	0.01
78	디클로뷰트라졸 (Diclobutrazol)	0.01	119	펜퓨람(Fenfuram)	0.01
79	디클로포프메틸(Diclofop-methyl)	0.01	120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5

No.	농약성분명	허용기준	No.	농약성분명	허용기준
121	페노뷰카브(Fenobucarb)	0.01	162	아이소프로파린(Isopropalin)	0.01
122	페노티오카브(Fenothiocarb)	0.01	163	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lane)	0.01
123	페녹사닐(Fenoxanil)	0.01	164	아이소피라잠(Isopyrazam)	0.05
124	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	0.01	165	아이소티아닐(Isotianil)	0.2
125	펜프로피모르프(Fenpropimorph)	0.01	166	아이속사디펜-에틸 (Isoxadifen-ethyl)	0.01
126	펜피라자민(Fenpyrazamine)	0.01	167	크레속심메틸(Kresoxim-methyl)	0.1
127	펜손(Fenson)	0.01	168	렙토포스(Leptophos)	0.01
128	펜티온(Fenthion : MPP)	0.1T	169	메펜피르-디에틸(Mefenpyr-diethyl)	0.01
129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0.05T	170	메파니피림(Mepanipyrim)	0.01
130	피프로닐(Fipronil)	0.05	171	메프로닐(Mepronil)	0.01
131	플람프로프-아이소프로필(Flamprop-isopropyl)	0.01	172	메탈락실(Metalaxyl)	0.05T
132	플루아크리피림(Fluacrypyrim)	0.01	173	메티다티온(Methidathion)	0.01
133	플루아지포프-뷰틸(Fluazifop-butyl)	0.05	174	메토프로트린(Methoprotryn)	0.01
134	플루클로랄린(Fluchloralin)	0.01	175	메톡시클로르(Methoxychlor)	0.01
135	플루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	0.01	176	메틸트리티온(Methyl trithion)	0.01
136	플루엔설폰(Fluensulfone)	0.01	177	메톨라클로르(Metolachlor)	0.05
137	플루펜피르-에틸(Flufenpyr-ethyl)	0.01	178	메트리뷰진(Metribuzin)	0.1
138	플루메트랄린(Flumetralin)	0.01	179	엠지케이-264(MGK-264)	0.01
139	플루미옥사진(Flumioxazin)	0.02†	180	몰리네이트(Molinate)	0.01
140	플루오피람(Fluopyram)	0.3†	181	모노리누론(Monolinuron)	0.01
141	플루오로클로리돈(Fluorochloridone)	0.01	182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0.01
142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	0.01	183	니트로탈-아이소프로필(Nitrothal-isopropyl)	0.01
143	플루실라졸(Flusilazole)	0.05†	184	노나클로르(Nonachlor)	0.01
144	플루티아닐(Flutianil)	0.01	185	뉴아리몰(Nuarimol)	0.01
145	플루발리네이트(Fluvalinate)	0.01	186	오쏘페닐페놀(Ortho-phenyl phenol)	0.01
146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	0.15†	187	옥사디아존(Oxadiazon)	0.01
147	포노포스(Fonofos)	0.01	188	옥사딕실(Oxadixyl)	0.1T
148	포모치온(Formothion)	0.01	189	옥시플루오르펜(Oxyfluorfen)	0.05†
149	할펜프록스(Halfenprox)	0.01	190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0.01
150	헵타클로르(Heptachlor)	0.01(E)	191	파라티온(Parathion)	0.01
151	헵테노포스(Heptenophos)	0.01	192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0.01
152	헥시티아족스(Hexythiazox)	0.01	193	펜코나졸(Penconazole)	0.01
153	인다노판(Indanofan)	0.01	194	펜디메탈린(Pendimethalin)	0.05
154	인독사카브(Indoxacarb)	0.2	195	펜플루펜(Penflufen)	0.01
155	이프코나졸(Ipconazole)	0.01	196	펜타클로로벤조니트릴(Pentachlorobenzonitrile)	0.01
156	이프로벤포스(Iprobenfos)	0.01	197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0.09†
157	이프로디온(Iprodione)	0.01	198	펜톡사존(Pentoxazone)	0.01
158	이사조포스(Isazofos)	0.01	199	퍼메트린(Permethrin)	0.05†
159	아이소펜포스(Isofenphos)	0.01	200	퍼탄(Perthane)	0.01
160	아이소펜포스-메틸(Isofenphos-methyl)	0.01	201	펜토에이트(Phenthoate)	0.01
161	아이소프로카브(Isoprocarb)	0.01	202	포스파미돈(Phosphamidon)	0.01

No.	농약성분명	허용기준	No.	농약성분명	허용기준
203	포사론(Phosalone)	0.01	244	시메트린(Simetryn)	0.01
204	포스멧(Phosmet)	0.01	245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0.01
205	프탈리드(Phthalide, Fthalide)	0.01	246	스피록사민(Spiroxamine)	0.01
206	피콕시스트로빈(Picoxystrobin)	0.05 †	247	설포텝(Sulfotep)	0.01
207	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nyl butoxide)	0.01	248	테부코나졸(Tebuconazole)	0.1†
208	피리미카브(Pirimicarb)	0.01	249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	0.05
209	피리미포스에틸(Pirimiphos-ethyl)	0.01	250	테부피림포스(Tebupirimfos)	0.01
210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0.01	251	테크나젠(Tecnazene)	0.01
211	프레틸라클로르(Pretilachlor)	0.01	252	테플루트린(Tefluthrin)	0.05
212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0.07	253	터바실(Terbacil)	0.01
213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0.01	254	터부메톤(Terbumeton)	0.01
214	프로디아민(Prodiamine)	0.01	255	터부트린(Terbutryn)	0.01
215	프로페노포스(Profenofos)	0.01	256	테트라클로르빈포스(Tetrachlorvinphos)	0.01
216	프로플루랄린(Profluralin)	0.01	257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0.2
217	프로하드로자스몬(Prohydrojasmon)	0.01	258	테트라디폰(Tetradifon)	0.01
218	프로메톤(Prometon)	0.01	259	테트라메쓰린(Tetramethrin)	0.01
219	프로메트린(Prometryn)	0.01	260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0.01
220	프로파클로르(Propachlor)	0.01	261	티오메톤(Thiometon)	0.01
221	프로파닐(Propanil)	0.01	262	티오나진(Thionazin)	0.01
222	프로파진(Propazine)	0.01	263	톨클로포스메틸(Tolclofos-methyl)	0.01
223	프로페탐포스(Propetamphos)	0.01	264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0.01
224	프로팜(Propham)	0.01	265	트리알레이트(Tri-allate)	0.01
225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0.06 †	266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0.01
226	프로피소클로르(Propisochlor)	0.01	267	트리디판(Tridiphane)	0.01
227	프로피자마이드(Propyzamide)	0.01	268	트리플록시스트로빈(Trifloxystrobin)	0.04 †
228	프로티오포스(Prothiofos)	0.01	269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0.05
229	피라카볼리드(Pyracarbolid)	0.01	270	트리플루랄린(Trifluralin)	0.05
230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0.01	271	빈클로졸린(Vinclozolin)	0.01
231	피라플루펜에틸(Pyraflufen-ethyl)	0.01	272	족사마이드(Zoxamide)	0.01
232	피라조포스(Pyrazophos)	0.01	273	트리메타카브(Trimethacarb)	0.01
233	피리달릴(Pyridalyl)	0.05	274	육-비에이(Benzyladenine, 6-Benzyl aminopurine)	0.01
234	피리페녹스(Pyrifenox)	0.01	275	아바멕틴(Abamectin)	0.05
235	피리프탈리드(Pyriftalid)	0.01	276	아세페이트(Acephate)	0.05
236	피리메타닐(Pyrimethanil)	0.01	277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1.0
237	피리미노박메틸(Pyriminobac-methyl)	0.01	278	알디카브(Aldicarb)	0.01
238	퀴날포스(Quinalphos)	0.01	279	알레트린(Allethrin)	0.01
239	퀴녹시펜(Quinoxyfen)	0.01	280	아메톡트라딘(Ametoctradin)	0.01
240	퀸토젠(Quintozene)	0.01	281	아미설브롬(Amisulbrom)	0.01
241	퀴잘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	0.05 †	282	아미트라즈(Amitraz)	0.01
242	실라플루오펜(Silafluofen)	0.01	283	아자메티포스(Azamethiphos)	0.01
243	시메코나졸(Simeconazole)	0.01	284	아진포스메틸(Azinphos-methyl)	0.01

No.	농약성분명	허용기준	No.	농약성분명	허용기준
285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0.5+	326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0.05
286	베나락실(Benalaxyl)	0.01	327	사이목사닐(Cymoxanil)	0.01
287	벤디오카브(Bendiocarb)	0.01	328	사이프로코나졸(Cyproconazole)	0.05+
288	벤설라이드(Bensulide)	0.01	329	다이뮤론(Daimuron)	0.01
289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Benthiavalicarb-isopropyl)	0.01	330	디설포톤(Disulfoton)	0.01
290	벤조비사이클론(Benzobicyclon)	0.01	331	데메톤-S-메틸(Demeton-S-methyl)	0.01
291	벤족시메이트(Benzoximate)	0.01	332	데메톤-S-메틸-설폰(Demeton-S-methyl-sulfone)	0.01
292	비스트리플루론(Bistrifluron)	0.1	333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0.05
293	바이오레스메트린(BioResmethrin)	0.01	334	트리클로르폰(Trichlorfon)	0.05
294	비터타놀(Bitertanol)	0.2T	335	디클로슐람(Diclosulam)	0.01
295	빅사펜(Bixafen)	0.01	336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0.1
296	브로마실(Bromacil)	0.01	337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0.01
297	뷰토카복심(Butocarboxim)	0.01	338	디노테퓨란(Dinotefuran)	0.05
298	카펜스트롤(Cafenstrole)	0.01	339	디우론(Diuron)	0.01
299	카바릴(Carbaryl)	1.0T	340	도딘(Dodine)	0.01
300	카벤다짐(Carbendazim)	0.2	341	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0.05
301	티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	0.2	342	에스프로카브(Esprocarb)	0.01
302	카베타마이드(Carbetamide)	0.01	343	에타복삼(Ethaboxam)	0.01
303	카보퓨란(Carbofuran)	0.05	344	에티오펜카브(Ethiofencarb)	0.01
304	퓨라티오카브(Furathiocarb)	0.05	345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0.2
305	카프로파마이드(Carpropamide)	0.01	346	에트림포스(Etrimfos)	0.01
306	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	0.05	347	파목사돈(Famoxadone)	0.01
307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	0.01	348	페나미포스(Fenamiphos)	0.01
308	클로르플루아주론(Chlorfluazuron)	0.1	349	페나자퀸(Fenazaquin)	0.01
309	클로리다존(Chloridazone)	0.01	350	펜헥사미드(Fenhexamid)	0.01
310	클로로벤주론(Chlorobenzuron)	0.01	351	페녹사프로프-에틸(Fenoxaprop-ethyl)	0.05
311	클로로톨루론(Chlorotoluron)	0.01	352	페녹시카브(Fenoxycarb)	0.01
312	클로록수론(Chloroxuron)	0.01	353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0.01
313	크로마페노자이드(Chromafenozide)	0.05	354	펜설포티온(Fensulfothion)	0.01
314	클로펜테진(Clofentezine)	0.01	355	펜트라자마이드(Fentrazamide)	0.01
315	클로메프로프(Clomeprop)	0.01	356	페림존(Ferimzone)	0.01
316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0.1	357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0.2
317	코르톡시포스(Crotoxyphos)	0.01	358	플루아지남(Fluazinam)	0.2
318	크루포메이트(Crufomate)	0.01	359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0.1
319	시아나진(Cyanazine)	0.01	360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0.05
320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0.4+	361	플루페나셋(Flufenacet)	0.01
321	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0.05	362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0.3
322	사이클라닐리프롤(Cyclaniliprole)	0.05	363	플루오메투론(Fluometuron)	0.01
323	사이클로에이트(Cycloate)	0.01	364	플루오피콜라이드(Fluopicolide)	0.01
324	사이클로프로트린(Cycloprothrin)	0.01	365	플루폭삼(Flupoxam)	0.01
325	사이에노피라펜(Cyenopyrafen)	0.05	366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1.5+

No.	농약성분명	허용기준	No.	농약성분명	허용기준
367	플루리돈(Fluridone)	0.01	408	메티오카브(Methiocarb)	0.05
368	플루설파마이드(Flusulfamide)	0.01	409	메토밀(Methomyl)	0.05
369	플루티아셋-메틸(Fluthiacet-methyl)	0.05	410	티오디카브(Thiodicarb)	0.05
370	플루톨라닐(Flutolanil)	0.2	411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0.5+
371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0.4+	412	메토브로뮤론(Metobromuron)	0.01
372	플룩사메타마이드(Fluxametamide)	0.05	413	메톨카브(Metolcarb)	0.01
373	포메사펜(Fomesafen)	0.01	414	메토미노스트로빈(Metominostrobin)	0.01
374	포클로르페뉴론(Forchlorfenuron)	0.01	415	메트라페논(Metrafenone)	0.01
375	포스티아제이트(Fosthiazate)	0.05	416	메빈포스(Mevinphos)	0.01
376	헥사코나졸(Hexaconazole)	0.5	417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0.01
377	헥사플루뮤론(Hexaflumuron)	0.01	418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0.05
378	헥사지논(Hexazinone)	0.01	419	네뷰론(Neburon)	0.01
379	이마잘릴(Imazalil)	0.01	420	니텐피람(Nitenpyram)	0.01
380	이미벤코나졸(Imibenconazole)	0.01	421	노레아 (노루론)(Norea (Noruron))	0.01
381	이미시아포스(Imicyafos)	0.01	422	노르플루라존(Norflurazon)	0.01
382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1.5+	423	노발루론(Novaluron)	0.05
383	이나벤파이드(Inabenfide)	0.01	424	오퓨레이스(Ofurace)	0.01
384	이프펜카바존(Ipfencarbazone)	0.01	425	오메토에이트(Omethoate)	0.01
385	이프로발리카브(Iprovalicarb)	0.01	426	오리사스트로빈(Orysastrobin)	0.01
386	아이소프로튜론(Isoproturon)	0.01	427	오리잘린(Oryzalin)	0.01
387	아이속사벤(Isoxaben)	0.01	428	옥사디아길(Oxadiargyl)	0.01
388	아이속사티온(Isoxathion)	0.01	429	옥사밀(Oxamyl)	0.01
389	레나실(Lenacil)	0.01	430	옥사티아피프롤린(Oxathiapiprolin)	0.01
390	레피멕틴(Lepimectin)	0.01	431	옥사지클로메폰(Oxaziclomefone)	0.01
391	리뉴론(Linuron)	0.05	432	옥시카복신(Oxycarboxin)	0.01
392	루페뉴론(Lufenuron)	0.05	433	옥시데메톤메틸(Oxydemeton-methyl)	0.01
393	말라옥손(Malaoxon)	0.01	434	페뷰레이트(Pebulate)	0.01
394	말라티온(Malathion)	0.01	435	펜사이큐론(Pencycuron)	0.05
395	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	0.07	436	페녹슐람(Penoxsulam)	0.01
396	만디프로파미드(Mandipropamid)	0.03	437	펜메디팜(Phenmedipham)	0.01
397	메카밤(Mecarbam)	0.01	438	페노트린(Phenothrin)	0.01
398	메페나셋(Mefenacet)	0.01	439	포레이트(Phorate)	0.05
399	메펜트리플루코나졸(Mefentrifluconazole)	0.4+	440	포스폴란(Phosfolan)	0.01
400	메포스폴란(Mephosfolan)	0.01	441	폭심(Phoxim)	0.01
401	메소트리온(Mesotrione)	0.01	442	피카뷰트라족스(Picarbutrazox)	0.01
402	메타플루미존(Metaflumizone)	0.2+	443	피콜리나펜(Picolinafen)	0.01
403	메타미포프(Metamifop)	0.01	444	피페로포스(Piperophos)	0.01
404	메타미트론(Metamitron)	0.01	445	프로베나졸(Probenazole)	0.01
405	메트코나졸(Metconazole)	0.05	446	프로메카브(Promecarb)	0.01
406	메타벤즈티아주론(Methabenzthiazuron)	0.01	447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0.07
407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0.05	448	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0.05

No.	농약성분명	허용기준	No.	농약성분명	허용기준
449	프로파자이트(Propargite)	0.01	483	설펜트라존(Sulfentrazone)	0.01
450	프로폭서(Propoxur)	0.01	484	설폭사플로르(Sulfoxaflor)	0.2†
451	프로퀴나지드(Proquinazid)	0.01	485	설프로포스(Sulprofos)	0.01
452	프로설포카브(Prosulfocarb)	0.01	486	테부페노자이드(Tebufenozide)	0.05
453	피디플루메토펜(Pydiflumetofen)	0.4†	487	테부플로퀸(Tebufloquin)	0.01
454	피플루뷰마이드(Pyflubumide)	0.03	488	테부티우론(Tebuthiuron)	0.01
455	피메트로진(Pymetrozine)	0.03	489	테플루벤주론(Teflubenzuron)	0.01
456	피라클로닐(Pyraclonil)	0.01	490	테프랄록시딤(Tepraloxydim)	0.01
457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0.05	491	터부포스(Terbufos)	0.05
458	피라지플루미드(Pyraziflumid)	0.01	492	터부틸라진(Terbuthylazine)	0.01
459	피라졸레이트(Pyrazolate)	0.01	493	테트라닐리프롤(Tetraniliprole)	0.2†
460	피라족시펜(Pyrazoxyfen)	0.01	494	테닐클로르(Thenylchlor)	0.01
461	피리벤카브(Pyribencarb)	0.2	495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0.01
462	피리벤족심(Pyribenzoxim)	0.01	496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0.05
463	피리부티카브(Pyributicarb)	0.01	497	티아메톡삼(Thiamethoxam)	1.0
464	피리다벤(Pyridaben)	0.01	498	티아조피르(Thiazopyr)	0.01
465	피리다펜티온(Pyridaphenthion)	0.01	499	티디아주론(Thidiazuron)	0.01
466	피리데이트(Pyridate)	0.01	500	티오벤카브(Thiobencarb)	0.2
467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nazon)	0.05	501	티아디닐(Tiadinil)	0.01
468	피리미디펜(Pyrimidifen)	0.01	502	톨펜피라드(Tolfenpyrad)	0.01
469	피리미설판(Pyrimisulfan)	0.01	503	트리아파몬(Triafamone)	0.01
470	피리오페논(Pyriofenone)	0.01	504	트리아자메이트(Triazamate)	0.01
471	피리프록시펜(Pyriproxyfen)	0.01	505	트리뷰포스(Tribufos)	0.01
472	피로퀼론(Pyroquilon)	0.01	506	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0.01
473	퀴노클라민(Quinoclamine)	0.01	507	트리플루뮤론(Triflumuron)	0.01
474	사플루페나실(Saflufenacil)	0.3†	508	트리포린(Triforine)	0.01
475	세크뷰메톤(Secbumeton)	0.01	509	트리티코나졸(Triticonazole)	0.01
476	세닥산(Sedaxane)	0.01	510	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	0.05
477	세톡시딤(Sethoxydim)	0.05†	511	유니코나졸(Uniconazole)	0.01
478	시마진(Simazine)	0.01	512	바미도티온(Vamidothion)	0.01
479	스피네토람(Spinetoram)	0.05	513	버놀레이트(Vernolate)	0.01
480	스피노사드(Spinosad)	0.01	514	엑스엠씨(XMC)	0.01
481	스피로디클로펜(Spirodiclofen)	0.5			
482	스피로테트라맷(Spirotetramat)	4.0†			

* † 표시 기준 : 수출국의 요청으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을 의미하며, 기준 적용 시에는 국내 및 수입 농·축·수산물에 동일하게 적용
* T 표시 기준 : 농약의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의미
* (E) 표시 기준 : 사용금지 되었으나 토양 내 잔류하여 농산물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의미
* (R) 표시 기준 : 먼저 재배되는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이 토양 내 잔류하여 다음 재배되는 농산물에 검출될 수 있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의미

별표 6 검역대상 잡초

검역대상 잡초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식물 잡초 여부 목록』에 의거 아래의 검역잡초 발견 시 반송 또는 선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처리 필요 시 공급자 비용부담조건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검역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잡초/미생물/격리 > 『수입식물 잡초여부 목록』의 잡초 해당 식물명 수시 업데이트 확인 필요
- 도착항 신고시 변경고시분이 있을 경우 변경 고시분을 따른다.

학명(學名)	영명(英名)	국명(國名)	과명(科名)	크기(㎜)
Centaurea repens	russian kanapweed	수레국화류	국화과	2.5 ~ 4.0
Centaurea solstitialis	yellow star thistle	수레국화류	〃	2.2 ~ 2.7
Cirsium arvense	canada thistle	캐나다엉겅퀴	〃	2.5 ~ 4.0
Iva xanthifolia	giant sumpweed	*Iva*속	〃	2.0 ~ 2.9
Xanthium spinosum	common cocklebur	바늘도꼬마리	〃	7.0 ~ 15.0
Picris echioides	bristlly oxtongue	쇠서나물류	〃	2.5 ~ 3.5
Cirsium vulgare	bull thistle	엉겅퀴류	〃	3.0 ~ 4.0
Amsinckia intermedia	fiddle neck	지치류	지치과	1.7 ~ 3.0
Myosotis arvensis	field forget-me-not	왜지치류	〃	1.3 ~ 2.0
Linaria dalmatica	broadleaf toadflax	해란초류	현삼과	1.0 ~ 1.8
Striga spp.	witchweed	*Striga*속	〃	0.2 ~ 0.3
Alternanthera philoxeroides	alligator weed	덩굴맨드라미류	비름과	2.0 ~ 2.5
Cenchrus longispinus	longspine sandbur	이삭가시풀	화본과	3.0 ~ 7.0
Conium maculatum	poison hemlock	나도독미나리	미나리과	2.0 ~ 4.0
Cuscuta spp.	dodder	새삼류	메꽃과	0.5 ~ 3.0
Emex australis	spiny emex	*Emex*속	마디풀과	7.0 ~ 10.0
Geranium dissectum	cutleaf geranium	쥐손이풀류	쥐손이풀과	1.5 ~ 2.0
Orobanche spp.	broomrape	초종용류	열당과	0.2 ~ 0.4
Salvinia molesta	salvinia	생이가래류	생이가래과	영양번식
Solanum elaeagnifolium	white horsenettle	가지류	가지과	2.5 ~ 4.0

별표 7 콩나물콩 시장가치하락율 적용산식

콩나물콩 시장가치하락율 적용 산식

○ 콩나물콩 품위가 구매규격을 벗어나나 인수규격 이내인 경우, 아래 산식으로 시장가치하락률을 적용하여 구상한다.

구 분	산 식	비 고
완전립	소립 : (PS-PT) ÷ 2.0 × 6.5(%) 중립 : (PS-PT) ÷ 2.0 × 7.4(%) 대립 : (PS-PT) ÷ 2.0 × 4.0(%)	PS = 완전립규격치 PT = 완전립검정치
피해립	소립 : (OS-OT) ÷ 1.3 × 6.5(%) 중립 : (OS-OT) ÷ 1.3 × 7.4(%) 대립 : (OS-OT) ÷ 1.3 × 4.0(%)	OS = 피해립규격치 OT = 피해립검정치
변질·변색	소립 : (HS-HT) ÷ 3.0 × 6.5(%) 중립 : (HS-HT) ÷ 3.0 × 7.4(%) 대립 : (HS-HT) ÷ 3.0 × 4.0(%)	HS = 변질변색규격치 HT = 변질변색검정치
물콩	[1-{(100-WT) ÷ (100-WS)}] × [{(WT-WS) ÷ WS}+1] × 110%	WS = 물콩규격치 WT = 물콩검정치
이물	[1-{(100-FMT) ÷ (100-FMS)}] × [{(FMT-FMS) ÷ FMS}+1] × 110%	FMS = 이물규격치 FMT = 이물검정치
발아율	소립 : (GS-GT) × 2.2(%) 중립 : (GS-GT) × 2.1(%) 대립 : (GS-GT) × 1.9(%)	GS = 발아율규격치 GT = 발아율검정치
낱알의 고르기	소립 : (US-UT) ÷ 5.0 × 6.5(%) 중립 : (US-UT) ÷ 5.0 × 7.4(%) 대립 : (US-UT) ÷ 5.0 × 4.0(%)	US = 낱알고르기규격치 UT = 낱알고르기검정치

※ 기타 상품성 하락에 영향을 주는 하자 발생 시, 시장조사를 통해 가치하락률을 산정할 수 있음

별지서식 1 | **Supplier's Certificate**

Supplier's Certificate

To :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Date :
Attn :

1. Invitation No. **AT** - -
2. The Origin & Commodity : i.e.) () SoyBean Sprouting
3. Port of Loading : _____
4. Quantity : _____ M/T
5. Supplier : Name, Address, Tel. No., President
6. Agent : Name, Address, Tel. No., President

We, as an overseas supplier, certify that we fully understand all terms & conditions of the above tender, and are pleased to submit the supplier's certificate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above tender.

We hereby appoint the above company as our agent in Korea, and entrust the agent with all rights to attend the above tender and to make a contract with **aT**, if award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 conditions of the above tender on our behalf.

In addition, we certify that we will supply better quality than the purchasing specifications of the above tender.

Supplier's Name

President's Signature

별지서식 2 | **Power of Attorney**

POWER OF ATTORNEY

1. Invitation No. **AT** - -

2. Details of the Mandator

○ Company Name :

○ Company Address :

○ Contact Number :

○ President : (Signature)

3. Details of an Authorized Agent

○ Name :

○ Address :

○ Contact Number :

○ Agent : (Signature)

We hereby appoint the above our agent, and entrust the agent with all rights to attend the above Inspection on our behalf.

Supplier's Company Name

President's Signature

Date :

* 선적 전 품위확인 시, 해외공급자를 대신하여 국내대리인이 현장 입회할 경우 사용

별지서식 3 The form of B-bond

The form of B-bond

We, _____, hereby issue our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No. _____ in favor of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Naju-si, Jeonnam-Gwangju, Korea.**

For account of _____, for the sum of US$_____(say U.S. dollar_____) as a security covering bid bo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id number **AT - - .**

This stand-by L/C is available for payment against the sight draft(s) drawn on us accompanied by beneficiary's statement stating that accountee has failed to fulfill its any obligation under the bid number **AT - - .**

This stand-by L/C is valid in Korea for a period of 31 days after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tenders from the issuing date of this stand-by L/C and shall be released upon beneficiary's instructions after contracting under depositing performance bond, or on its expiry date which may occur first and T/T reimbursement is allowed.

This stand-by letter of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600).

※ 개설은행은 대외 공신력이 있는 은행이어야 한다. (개설 이전 공사가 국내은행을 통하여 신용도 확인)

※ B-bond 개설시 국내 Advising Bank(농협은행 aT본사지점)
(Advising Bank) Nonghyup Bank aT Head Office Branch
(Address) 227, Munhwa-ro, Naju-si, Jeonnam-Gwangju, Korea(58326)
(Tel) 061-337-7101~2, (Fax) 061-337-7105, (Cable) KONACOF,
(Telex) K27421, K27235, (Swift) NACFKRSE

별지서식 4 The form of P-bond

The form of P-bond

We, _____, hereby issue our irrevocable stand-by letter of credit No. _____ in favor of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Naju-si, Jeonnam-Gwangju, Korea.**

For account of _____, for the sum of US$_____(say U.S. dollar_____) as a security covering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id number **AT - -** , the contract concerned and L/C issued on the basis of this stand-by L/C.

This stand-by L/C is available for payment against the sight draft(s) drawn on us accompanied by beneficiary's statement stating that accountee has failed to fulfill its any obligation under the bid number **AT - -** , the contract concerned and L/C issued on the basis of this stand-by L/C.

This stand-by L/C is valid in Korea for a period of 90 days after the due date of arrival from the issuing date of this stand-by L/C.
(Valid date : MM/DD/YY/ ~ MM/DD/YY/)

It shall be released upon beneficiary's instruction after satisfactory completion of the contract, or on its expiry date which may occur first and T/T reimbursement is allowed.

This stand-by L/C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600)

※ Standby L/C의 Expiry date는 도착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개설은행은 대외 공신력이 있는 은행이어야 한다. (개설 이전 공사가 국내은행을 통하여 신용도 확인)

※ P-bond 개설시 국내 Advising Bank(농협은행 aT본사지점)
(Advising Bank) Nonghyup Bank aT Head Office Branch
(Address) 227, Munhwa-ro, Naju-si, Jeonnam-Gwangju, Korea(58326)
(Tel) 061-337-7101~2, (Fax) 061-337-7105, (Cable) KONACOF,
(Telex) K27421, K27235, (Swift) NACFKRSE

별지서식 5 | **물품 공급 계획서**

물품 공급계획서

수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부장 및 보관관리부장

귀사의 물품구매입찰(AT - SBI - - C)에서 낙찰된 물품의 공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 물품확보내역

창 고 명	확보량	확보율	주 소 (약도별첨)
	톤	낙찰량의 %	

2. 해외제조업소(포장, 가공장소)

제조업소명	대표자명	주소지

3.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계약체결		
물품수집		수매지역 :
선별.포장		1일 작업계획량 : 톤
현지품위확인(유통공사)		
점보백(컨테이너) 적입		1일 적입(선적)량 : 컨테이너
내륙운송		
본선 선적		선적항 : , 모선명 :
선적항 출발		
대한민국항 도착		도착항 :

4. 현지물품확인 희망기간 : 20 . . . ~ 20 . . . (일간)

단, 현지물품확인 요청은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되 작업상황에 따라 출장 7일전까지 변경요청 가능

20 . . .

주소 및 상호

대 표 자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6 **선적 전 현지물품확인 요청서**

선적 전 현지물품확인 요청서

수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부장 및 보관관리부장

귀사와 구매계약(AT - SBI - - C) 체결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선적(포장) 준비 완료하였기에 품위확인 요청합니다.

1. 확인 요청기간 : 20 . . . ~ 20 . . . (일간)

내 용	일 정	비 고
○ 출국 및 도착 ○ 물 품 확 인 ○ 귀 국		○ 도착지역 : ○ 지역 : 물량 : ○ 출발지역 :

2. 물품내역

창 고 명	확보수량	단 량	포장방법 및 상태	보관장소

* 계약물량 100% 선별·포장 미실시로 판명 될 경우 구매입찰 특별유의서 “선적 전 물품확인” 에 따름

3. 품위상태

구분 \ 규격항목		완전립	피해립 (변질.변색립)	이 물	발아율	수분	낟알의 고르기	물콩
구 매 규 격	대립 중립	97%이상	2.7%이하 (1.0%이하)	0.3%이하	87%이상	14.0%이하	90%이상	6.0%이하
	소립	97%이상	2.7%이하 (1.0%이하)	0.3%이하	90%이상	14.0%이하	90%이상	6.0%이하
자체조사결과								

4. 선적계획

선 적 항	모 선 명	선적예정일	출발예정일	도 착 항	도착예정일

5. 당사 또는 해외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출장기간을 연장 또는 재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출장 비용은 당사 및 해외공급자가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주소 및 상호
대 표 자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7 | **확약서**

확 약 서

□ 계약번호 :
□ 품 명 :
□ 계약물량 :
□ 모 선 명 :
○ B/L No :
□ 출항예정일자 :
□ 입항예정일자 :

선적지 품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물량은 국내 도착 후 입고지에서 컨테이너별 정밀검정으로 품위확인 절차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품위확인(도착항 및 비축기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외공급자와 국내대리인의 책임 하에 해당 물품의 반송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치 내용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품위확인(비축기지 입고)을 완료하고 인수 이전에 발생되는 재검정 등 추가 비용은 해외공급자 및 국내대리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확인자 서명 >

○ 국내 대리인 : (인)

○ 해외 대리인 : (인)

별지서식 8 | **안전성검사 결과 확인서**

안전성검사 결과 확인서

수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부 귀하

당사는 아래와 같이 선적 전 정선, 포장이 완료된 물품의 시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시료채취보고서」를 제출하오며, 해당 시료로 의뢰한 안전성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안전성검사결과증명서」와 「안전성검사 결과 확인서」가 상이하거나 허위 사실 제출로 판정될 경우 해외공급자와 국내대리인 책임 하에 해당 물품의 반송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치 내용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 **계 약 번 호** :

☐ **계 약 물 량** :

☐ **해외공급자** :

☐ **시료채취기관명** :

☐ **검사기관명** :

- **주 소** :

☐ **검사실일** : *YYYY.MM.DD*

☐ **합 격 여 부** : ***합격 / 불합격***

○ **누락항목 검사 실 계획** : *일자(YYYY.MM.DD), 기관(국내)*

☐ **기타 참고사항**:

20 . . .

주소 및 상호

대 표 자 (인)

* 첨부 : 시료채취보고서 및 안전성검사증명서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9 **품위계측조사표**

품위계측 조사표(콩나물콩)

(Inspection Report : Non-GM Soybean for Sprouting)

1. 수출업체(Exporter) :
2. 샘플채취 장소(Location) :
3. 샘플채취 일자(Date) :
4. Lot(더미) 번호(No.) :
 ○ '규격합치' 물량 적재 후 컨테이너번호 :
5. 대상물량(Quantity) :
6. 조사결과(The Result of Inspection)

구 분	규 격 항 목 (Contents)							
	수 분	완전립	피해립	발아율	물 콩	낟알의 고르기	이 물	색 택
구매규격 (1등급)	14.0%이하	97.0%이상	2.7%이하	87.0% 이상 (소립종 90.0% 이상)	6.0%이하	90.0%이상	0.3%이하	황백색
No.1								
No.2								
No.3								
평균 (Average)								

※ Lot(더미) 번호(No.)별 1매씩 작성

□ 주요 품위확인 점검표

품위확인 점검표				
No.	점검내용	Yes	No	참고 또는 특기사항 (Other Remarks & Special Issues)
1	창고 소재지 및 보관물량 일치여부			
2	파레트, 포장조건, 중량, 한글표시사항			
3	의도적 규격미달품 혼입여부			
4	견본채취 후 더미 봉인			
5	컨테이너 청소상태 및 결로방지 조치			
6	적재한도 준수, 여분포장재 5매 적입, 적입완료 컨테이너 aT씰 봉인			

□ 품위확인

○ 품위확인 결과(해당부분 ○표시) : 규격합치() 또는 규격미달()

○ 검사일자(예시) : *2026.1.1. ~ 1.5(5일간)*

○ 검정업체 : (날인)

○ 공급업체 : (날인)

별지서식 10 | **시료 채취 요청서**

시료채취 요청서

수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부장, 보관관리부장(공사 지정 현지 검정사 채취 요청 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부장, 00 지사장(지사 채취 요청 시)
※ 시료 채취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수신자 기재

귀사와 구매계약(AT - SBI - - C) 체결한 물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의뢰용 시료채취를 요청합니다.

1. 확인 요청기간 : 20 . . . ~ 20 . . .(일간)

내 용	일 정	비 고
○ 물품 도착일 ○ 정선·포장 기간	2026.0.0 2026.0.0 ~ 2026.0.0	○ 출발지역 : ○ 도착지역 :

2. 물품내역

창고명	주소	물량	포장방법 및 상태
		000,000kg	00kg P.P bag

3. 선적계획

선 적 항	모 선 명	출발예정일	도 착 항	도착예정일

20 .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별지서식 11 | **시료 채취 보고서**

시료 채취 보고서

수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부

'26년 WTO TRQ 콩나물콩 구매계약(AT - SBI - - C) 물량에 대한 안전성검사용 시료채취를 아래와 같이 수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시료 채취일 : 20 . . .

내 용	일 정	비 고
○ 물품 도착일	20 .0.0	○ 출발지역 :
○ 정선·포장 기간	20 .0.0 ~ 20 .0.0	○ 도착지역 :

2. 시료채취 대상

창고명	주 소	물량	포장방법 및 상태
		000,000kg	00kg P.P bag

3. 시료 송부내역

구분	송부지	송부일	주 소	시료량
1	aT	20 .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4층 수급사업부 (13477)	00kg
2	(검사기관)			00kg

* aT 지사가 시료채취 할 경우 시료를 공급업체가 검사기관에 발송

4. 선적계획

선 적 항	모 선 명	출발예정일	도 착 항	도착예정일

* 첨부 : 관련 현장 사진(정선·포장되고 있는 작업현장, 포장재 사진 등)

20 .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12 | **콩나물콩 창고 적재 평면도**

콩나물콩 창고 적재 평면도

○ 업체명 :
○ 장 소 : 창고명 및 주소지
○ 물 량 : _____톤

(단위 : 톤)

창고 입구 ↓

① 25kg 포장백 800개	20	⑪	20
②	20	⑫	20
③	20	⑬	20
④	20	⑭	20
⑤	20	⑮	20
⑥	20	⑯	20
⑦	20	⑰	20
⑧	20		-
⑨	20		-
⑩	20		-
합 계	200		140

별지서식 13 발아시험 검정방법

1. 샘플시료 준비

○ 채취된 샘플을 Lot(더미)별로 균분기 또는 타월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 균분기를 사용하여 축분하며, 균분기가 없을 경우 혼합한 시료는 자를 이용하여 종형으로 선을 그어 4등분하여 대각선 부분끼리 모아 2개로 축분한 후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50g 정도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축분한다.

○ 축분된 시료 하나를 선택하여 계수기로 발아시험용 샘플시료를 채취한다.

- 샘플 시료 : 대립 200립, 중립 250립, 소립 350립

2. 발아시험 방법

○ 발아시험실의 및 물의 온도는 21±1℃ 유지, 물은 음용수 수준 깨끗한 물로 PH 6.5~7.5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 Lot(더미)별로 샘플 시료를 재배용 셀용기 (2셀에 20톤 한개 Lot(더미)별)에 고르게 부은 후 ON시간을 기록한다.

○ 콩나물재배기(신창INC 제작 청시루 SC-9000)에 음용수 수준의 깨끗한 물을 2/3 채우고 4개의 시료가 담긴 셀 용기를 재배기에 조립한 후 타임 스위치를 ON시킨다.

○ 재배기별로 셀이 4개로 구분되어 있어, 발아용 셀(20톤당 2개 셀의 평균수치로 산정 / 재배기 1대당 40톤의 2개 Lot(더미)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Lot(더미)별로 바뀌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한다.

○ 콩나물콩 재배용 물은 동일시간 주기적으로 1일 1회 교환하고, 재배기간은 5일(120시간)로 한다.

3. 발아결과 확인

○ 재배가 완료되면 발아시험 결과 양식에 Lot(더미)별로 기록한다.

- 시료 ON, 샘플시료량, 정상발아 확인하여 발아율을 기록

○ 시험용 채반에 발아용 셀을 1개씩 꺼낸 후 콩나물콩을 조금씩 빼어(머리 부분이 절단되지 않도록)흔들면서 정상 및 비정상을 구분하여 정상 생육한 입수의 전량에 대한 발아율을 산출한다.

- 비정상 발아 : 5㎝미만 성장, 배축길이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 줄기가 말린 것, 부패, 변질 등 발아가 전혀 안된 것

○ 발아율 : 재배기에 의한 발아 후 5㎝이상 정상 성장한 묘(입수)의 전량에 대한 비율

- 콩나물 자엽 두 쪽 중 한쪽을 기준으로 검은색, 회색, 붉은색 등으로 변질 및 손상된 면적이 10% 이하는 정상으로 인정
- 뿌리부분의 갈색, 몸체 길이 방향으로 쪼개진 것이 10% 이하는 정상으로 인정

별지서식 14 | **계좌입금 의뢰서**

계좌입금 의뢰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귀하

1. 의뢰자(국내대리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2. 의뢰내용

가. 수령금내역

◦ 관련입찰(계약)번호 및 용도 :

◦ 당초입금액 :

◦ 수령대상금액 :

- 기 타 : 문서번호 로 청구된 관련 구상금(USD) 공제 후 입금 요망

나. 수령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외화송금 시	수취은행명, 지점명, 은행주소, BANK CODE	해외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해외은행 A/C NO.

다. 계좌입금의 부대조건

◦ 은행 송금수수료의 부담 : 지급액에서 은행 송금수수료를 공제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의뢰자가 부담

◦ 의뢰내용의 하자에 대한 책임 : 의뢰자에게 귀속됨

◦ 상기 예금계좌로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
예금주명의 상이 및 입금한도의 초과 등 지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는 정당한 예금계좌의 서면에 의한 의뢰가 있을 때까지 자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송금지연에 대한 이자의 청구권은 없음

3. 의뢰서의 유효기간 : 의뢰금액 수령 시까지

4. 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 (원화 수령 시)

귀 공사가 우리 회사에 지급하는 일체의 자금 수령을 위하여 위와 같이 계좌입금의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별지서식 15 **잔류농약검사증명서 발급전 선적 확약서**

잔류농약검사증명서 발급전 선적 확약서

□ 수 신 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부장, 보관관리부장)
□ 계약번호 : AT - SBI -
□ 품 명 : 콩나물콩
□ 계약물량 : 톤
□ 해외공급자 :
□ 국내대행업체 :

잔류농약검사증명서 발급 전 선적확약서 제출에 한해 선적을 허용하나, 도착 후 잔류농약검사증명서의 잔류농약이 허용치 초과시 반송조치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적 이후 잔류농약검사 결과가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해외공급자 및 국내대리인의 귀책사유임을 알고, 도착지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처분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해외공급자(업체명) :

해외공급자 대 표 : (인 또는 서명)

국내대행업체(업체명) :

국내대행업체 대 표 : (인 또는 서명)

20 . . .

별지서식 16 **잔류농약검사증명서 발급전 선적 확약서(영문)**

Certificate of Agricultural Chemical Residues Pre-Issuance Shipping Commitment Letter

☐ To : Head of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Director of Bean Crop Management Department, Director of Storage Management Department)

☐ Contract number : AT - SBI -

☐ Item name : Soybean for sprouting

☐ Contract quantity : tons

☐ Foreign supplier :

☐ Domestic agent :

We fully understand that shipment is allowed if it is attached to the Shipping Commitment Letter prior to issuance of Certificate of Agricultural Chemical Residues and that the concerned shipment will be returned after arrival if the agricultural chemical residues stated on the Certificate exceed the limits. If the results of certificate of agricultural chemical residues exceed the limits, we understand the reasons are attributable to the foreign supplier and its domestic agent, and will abide by the destination government and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s orders without disagreement.

Foreign supplier(Company name) :

CEO/head of foreign supplier : (Sign / seal)

Domestic agent (Company name) :

Director of domestic agent : (Sign / seal)

20 . . .

별지서식 17 안전성 검사 시료 채취 방법

1-1. 국영무역 검사용 시료 채취 방법

□ **채취 시기 : 포장 이후 물품으로 선적 전 채취해야 함**

○ 포장일과 시료 채취일 날짜 대조 필수(포장일 이후 시료 채취)

* 확인순서 : 사전 안전성검사 결과일 이후 → 포장일 → 국영무역 검사용 시료 채취일

* 사전 안전성검사를 적용하지 않는 품목(콩나물콩 등)은 포장일 → 시료 채취일 확인

□ **방법 : 최소 14지점 이상을 무작위 선정하여 채취함**

○ 적재 중간 부분도 포함하여 균일하게 채취 지점을 선정해야 함

○ 색대로 채취하는 품목은 선적물량과 최소 채취량(2kg)을 고려하여 **더미별** 14지점 이상을 균일하게 채취, 혼합함

* 색대 사용품목 : 참깨, 콩나물콩, 팥, 녹두, 메밀

□ **포장 : 시료 도난 및 교체 방지를 위한 봉인 필수**

○ 오염, 손상 방지를 위해 밀봉 후 봉인씰(Seal) 및 시료 채취기관 양식의 시료내역표(Sampling Details)를 부착해야 함

- 봉인씰 장착이 불가능한 경우, 시료 채취 정보를 작성한 스티커(자체 제작, 채취기관 직인 날인)를 시료 포장지 입구에 봉인

* 시료 채취 필수정보 : 계약번호, 공급자명, 품목명, 물량, 채취장소, 채취일

□ **컨테이너 및 벌크선박 운송 시료 채취 방법**

○ (선적 전 채취) 국내·외 공인 검정기관에서 직접 채취

- 물량, 적입절차 등을 고려하여 채취 후 축분하여 대표 시료 제조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채취하는 경우 해당 시료를 검사에 사용

○ (국내 도착항 채취) 공인 검정기관에서 시료 채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컨테이너의 검체채취' 및 '선박의 벌크검체 채취' 적용

□ **유의 사항**

○ 국외검사기관용 시료와 공사 자체검사 시료는 각각 채취해야 함

○ 분할선적의 경우, 각 모선별(항차별)로 시료를 채취해야 함

별지서식 18 선적지 시료채취 절차

순서	단계	사진	세부내역
1	선적전 물품 및 물량 확인		□ 선적전 물품 확인 - 더미별 가로×세로×높이의 수량 환산하여 계약물량 일치 여부 확인 **□ 샘플 채취 중지 사항** **- 계약물량 미확보 시** **ex) 콩나물콩 500톤 : 총 9더미(60톤 단위)** *** 더미 사진 필수** **- 선적 전 물품확인 불가 시** □ 더미별 번호 표기
2	포장일자 확인		□ **입찰일 이후 포장일자 확인**
3	더미별 샘플채취		□ 안전성검사에 사용할 샘플 채취 **- 각 더미당 14곳 이상에서 샘플 채취 후 혼합하여 확보(2kg)** **- 더미별 중간에 적재되어 있는 곳에서도 샘플 채취 필수** - 더미별 채취 부분 숫자 표기 필수 * 공급업체가 구비한 색대로 샘플채취
4	샘플 축분		□ 샘플 오염, 교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씰링 작업 필수 □ **씰링 후, 시료내역표(자체양식)를 부착하여 국외검사기관 및 공사 수급사업부로 송부**